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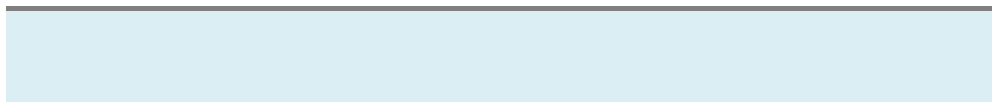
-
- 2016
-
- , 1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



- (公共性: 가
-)
-



-
- 가



-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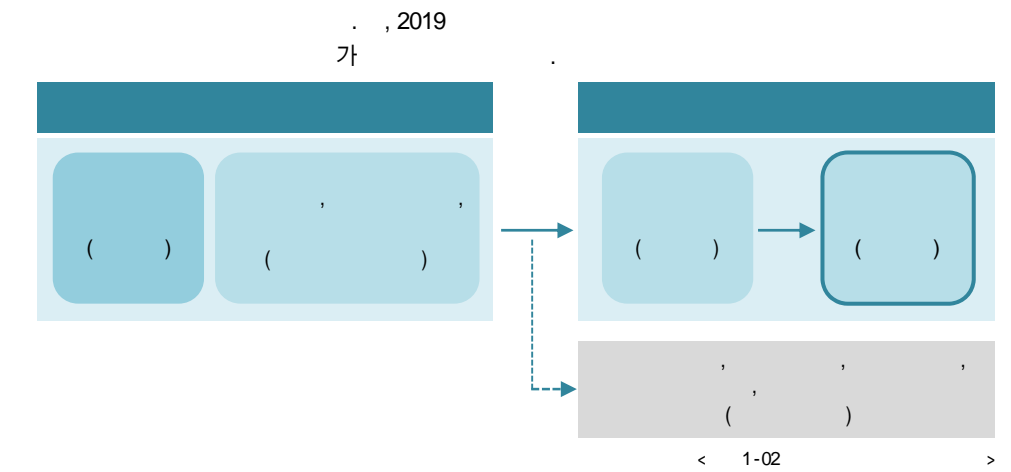
4.

- 2016 8 () 6 1 ,
- 가
- 가 .
- 5 10 .
- " "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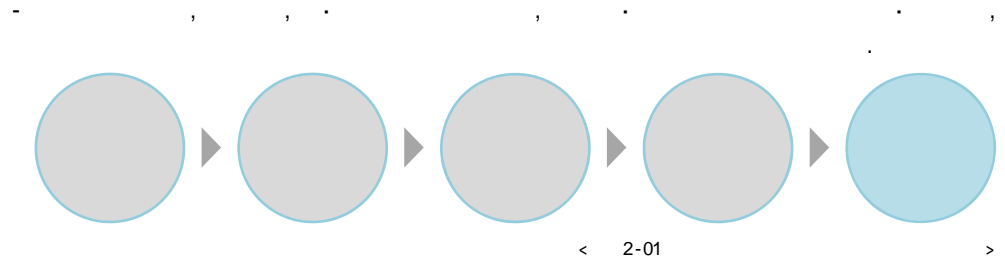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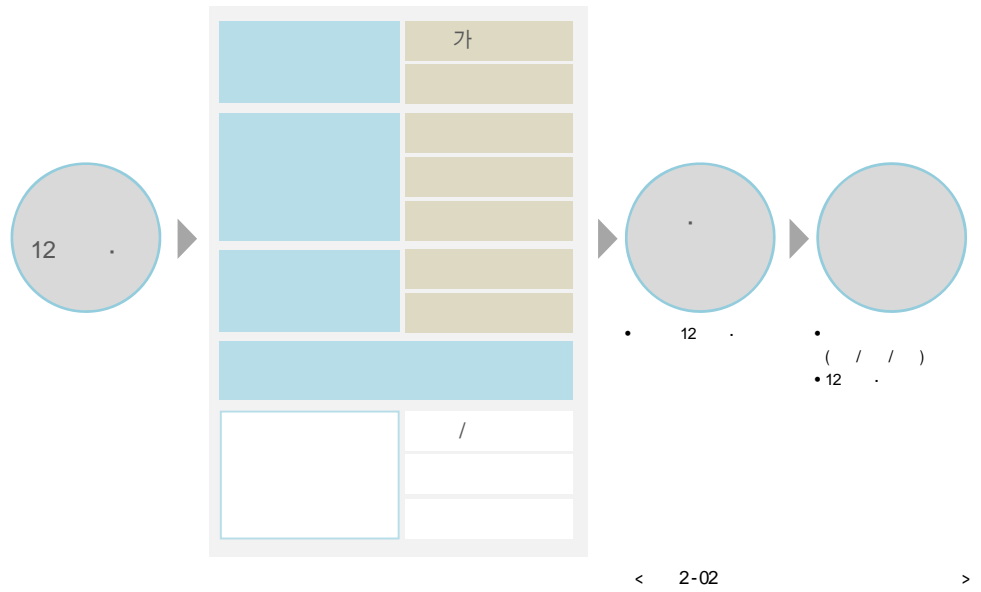
< 1-03 >



< 1-02 >



가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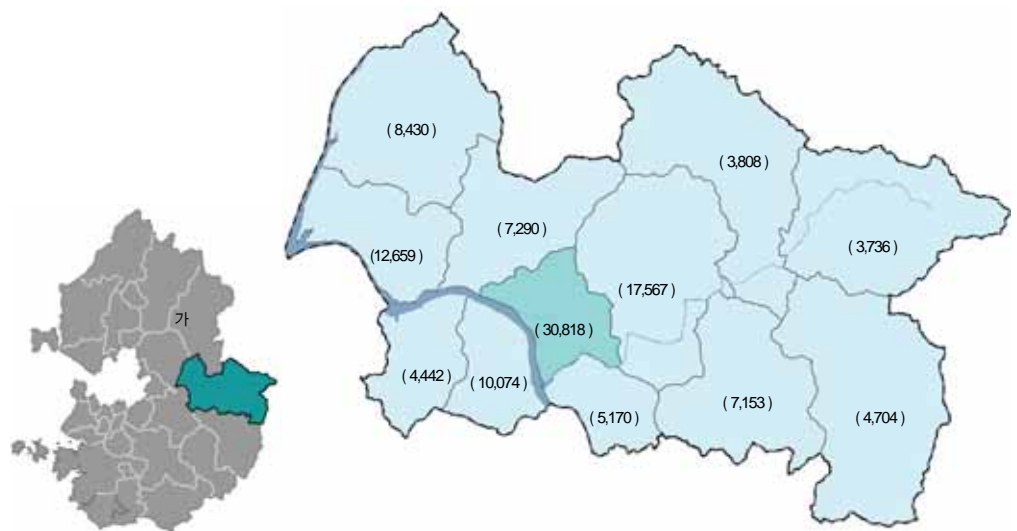


가

2.

2.1.

- (楊平郡) 가 , 877.69km² 31
- 가 , 1.45
- 가 ,
- 가 ,
- 877.69km² (49.07km²) 7 5.5%
- 2.79km²(5.7%), 45.65km²(92%)
- 73%가 ,
- 가 가
- 37km 46 (가 2 , 44)
- 44 2 , 190
- 6 ,
- 가
- 2019 877.69km², 1 11 271 802
- 58,563 117,670 (:59,107 , :58,563)
- 134 /km² , 8,068 (28,614)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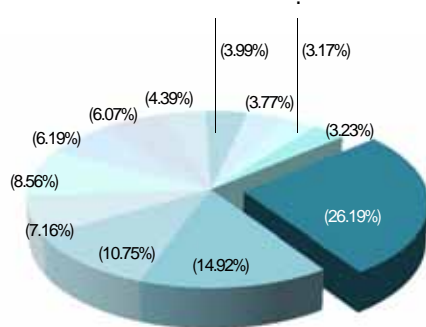


가 - 2018 12 117,670 2017 12 115,105 2565
가 ,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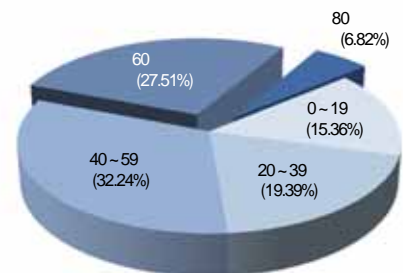
	65					
	117,670	59,107	58,563	26,932		
	117,670	59,107	58,563	26,932	23%	54,422
	30,818	15,438	15,980	4,439	14%	12,890
	10,074	5,011	5,063	1,702	17%	4,372
	4,442	2,225	2,217	1,147	26%	2,199
	12,659	6,397	6,262	2,639	21%	5,908
	7,290	3,735	3,555	1,586	22%	3,463
	8,430	4,410	4,320	1,732	20%	4,222
	3,808	1,927	1,881	1,118	29%	1,938
	3,736	1,893	1,843	1,346	36%	1,904
	4,704	2,344	2,360	1,463	31%	2,317
	7,153	3,453	3,338	2,088	29%	3,551
	17,567	8,884	8,683	3,598	20%	7,732
	5,170	2,531	2,486	1,289	25%	2,471

< 2-02 >

- 134 /km² 509 /km²
- 5.5% , 2.79km² 5.7%가
- 65 가 21,528 117,670 23%
31 65 11.87%, 14.76%
- 가
가
- 12 , , 3 50%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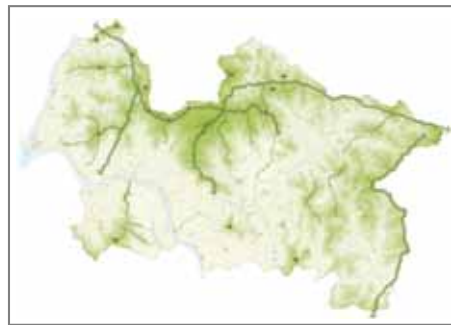
< 2-03 >



< 2-04 >

2.2.

가



< 2-04 >

46 (가 2 , 44)

, 가



< 2-05 >

가

가
가
가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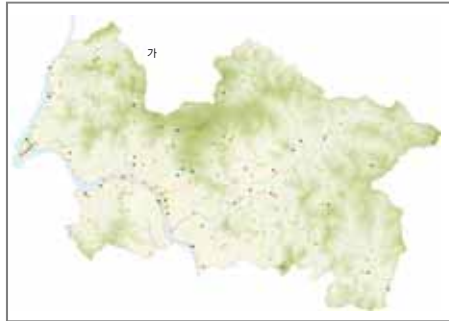
< 2-06 >

- 3, 3, , ,
- 6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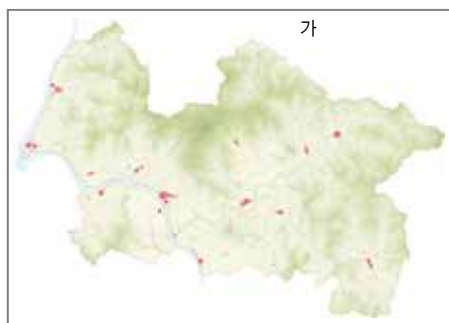
< 2-07 >

- 30), (531) (
- 가



< 2-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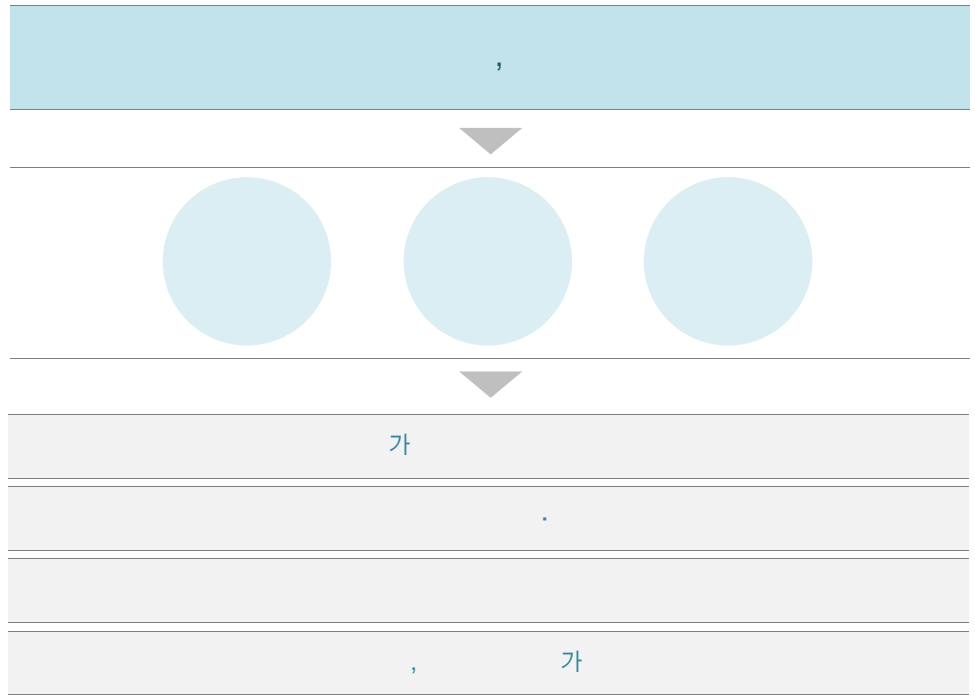
- 가 가 , () 가 가
- 가 가



< 2-09 가 >



2.3.



< 2-10 >

(C)

(B)

()

()
30

(,)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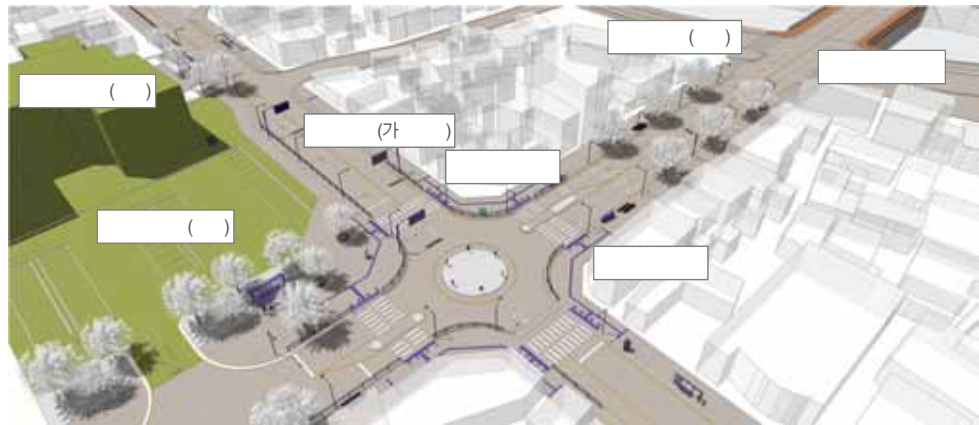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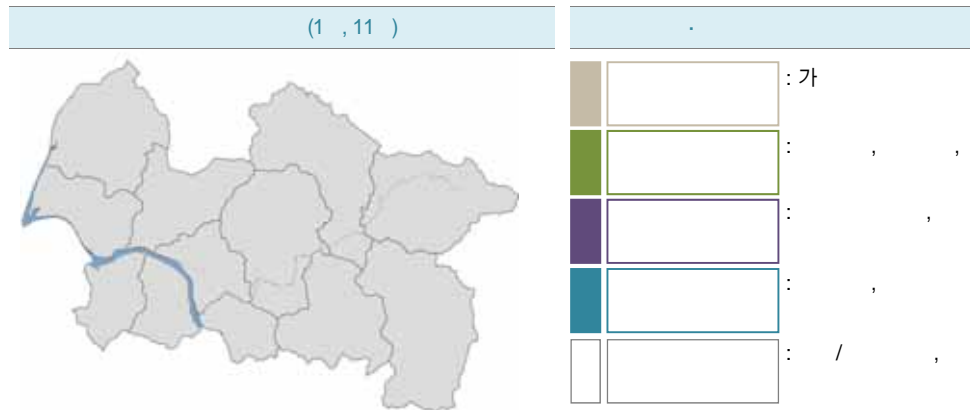


< 2-11 >

3.

3.1.

- 12
- 가 , 가
- 가



< 2-12 >

- 가 , , ,
- , , ,
- , , ,

3.2.



- 2019 , 42.22km², 12 , 40 160
12,890 30,818 (:15,438 , :15,380)

- 가
가 ,

- 가 .

- , , 가 가
가 .

- 가 가 ,

	() , , ,	
	, , , , ,	
	, 가 ,	
	, , , , ,	
	/ / .	

< 2-05 >



- 가 가 가 , ,

- 가

- 가 () , , ,

■



- ,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가

-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가

가

(:3 / :2 / :1)

	가					가							
	3	3	2	2	3	1	2	2	2	2	2	2	26

< 2-06 >

3.3.



2019 , 37.92km², 7 , 17 50
4,372 10,074 (5,011 5,063)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88 가

	() , 88	
	88	

< 2-07 >



가 .

가 가

가 .

가

가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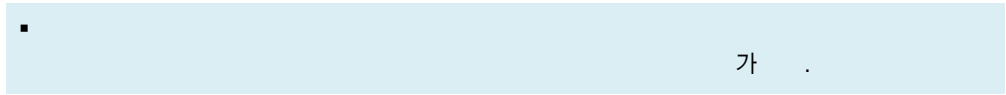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 / :2 / :1)

	가					가							
	1	2	2	2	1	2	1	1	2	2	2	1	19



3.4.



- 2019 , 41.4km², 6 , 15 40
2,199 4,442 (:2,225 , :2,2217) .

가

가

가 가

가

- 88

가

가

	CI	

< 2-09 >



가
가

- 88

가

가

가





- 가 .
- 가 .
- CI .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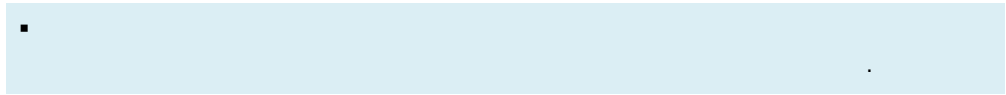
가

가

	가					가							
	1	3	2	2	1	2	1	1	2	2	2	1	20



가 (, ,) 가



6

가 가



가

3.6.



2019 , 66.67km², 4 , 17 41
3,463 7,290 (3,735 , 3,555)

(背山臨水)

가

가 6 .37

가

88

가

	(,) , 6	
	(, ,)	

< 2-13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CI, BI,

가

가 가



가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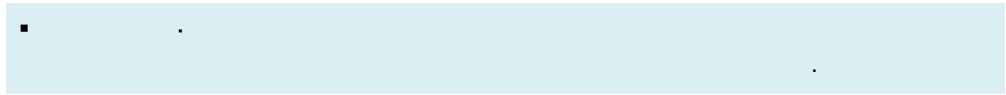
가 가
가 가
(:3 / :2 / :1)

	가					가							
	2	2	2	2	1	2	1	2	1	1	1	1	18



가

(가)



가 가

가

IC

가 가
가

가





- BI BI가 가 가

- 가 가

- BI BI 가



- ()

- 가

■ ,391 가

- BI 가 가

(:3 / :2 / :1)

	가					가							
	1	2	2	2	2	2	1	1	2	2	2	1	19

3.8.



- 2019 , 107.7km², 17 52 1,938
3,808 (:1,927 , :1,881)

- 6 가 가 , 345 .70 가 가
- 가 가
- 가 가 65 ,
가 가

	(6)	
	가	

< 2-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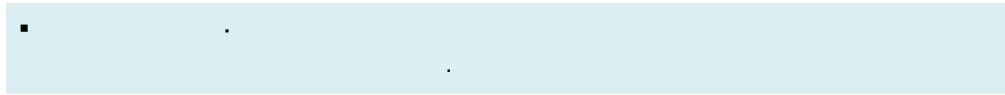


- 가 가
- 가 가
- , 가 가
- 가 가 가 가
-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3 / :2 / :1)

	가					가							
	2	2	2	2	3	1	2	1	1	1	2	2	21

3.9.

- 2019 , 97.56km², 9 , 26 46
 1,904 3,736 (:1,893 , :1,843)
 가 80% , 가가 50%가
 - 6 44 가 가
 - 65 가 , , 가 가
 - 가 가 가

	6	
	가 가 ,	

< 2-19 >



- 가 가
 - , LPG가 가
 - , 가







- 가
- 가 6, 44 가
- 가



- ,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3 / :2 / :1)

	가					가							
	1	2	3	2	1	2	1	1	2	1	2	1	19

3.10.



- 2019 , 120.4km², 8 , 20 84
2,317 4,704 (:2,344 2,360)

가

가

- IC가 가

- 가 가 가

가

- 2015 가 가 가

가 가

	IC	
	가	

< 2-21 >



- 가 , 가

- IC

- 가 가

가 가



- IC 가

- 가

가



- , ,

- 가 가 가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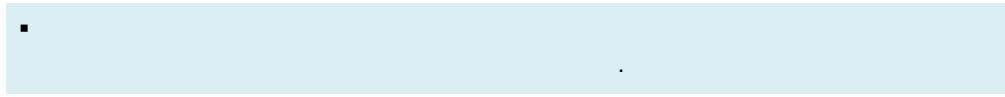
(:3 / :2 / :1)

	가					가							
	2	3	2	2	2	2	2	1	2	1	2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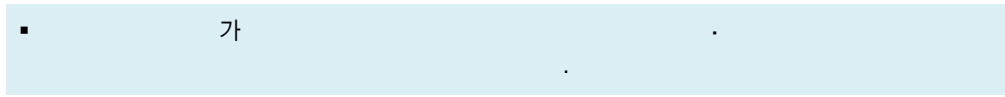
< 2-22 >



가
 ()



가
 가
 가
 가



가



- , , 가 가 .
- 가 .
- 가 .



- , , 가 가 .
- , , 가 .
- 가 가 .

- 가 가 .

(:3 / :2 / :1)

	가					가							
	2	1	2	2	2	2	1	2	1	2	2	1	20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 가
- 가



- 6 가 가
- 가
- 가

(:3 / :2 / :1)

	가					가							
	3	3	2	1	3	1	1	1	2	2	2	1	21

3.13.

2019 , 32.45km², 13 , 20 52
2,471 5,170 (:2,531 , :2,486)
가



가

37

가 가

가

가

	()	
	가 가	

< 2-27 >



37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 / :2 / :1)

	가					가							
	2	2	1	2	2	1	1	2	1	1	1	1	17

3.14.

- 12

가 < 2-31 >

(:3 / :2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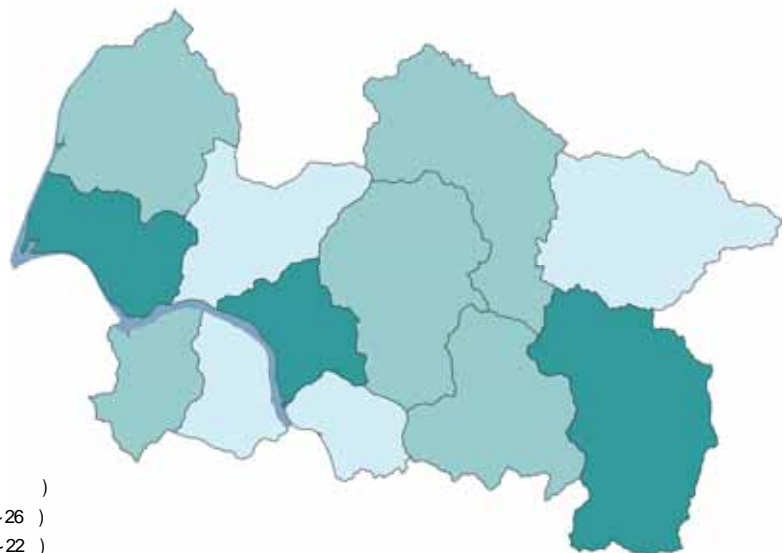
	가					가							
	3	3	2	2	3	1	2	2	2	2	2	2	26
	1	2	1	2	1	2	1	1	2	2	2	1	19
	1	3	2	2	1	2	1	1	2	2	2	1	20
	3	2	1	2	2	2	3	2	1	1	2	2	23
	2	2	2	2	1	2	1	2	1	1	1	1	18
	1	2	2	2	2	2	1	1	2	2	2	1	20
	2	2	2	2	3	1	2	1	1	1	2	2	21
	1	2	3	2	1	2	1	1	2	1	2	1	19
	2	3	2	2	2	2	2	1	2	1	2	2	23
	2	1	2	2	2	2	1	2	1	2	2	1	20
	3	3	2	1	3	1	1	1	2	2	2	1	21
	2	2	1	2	2	1	1	2	1	1	1	1	17
	22	27	22	23	21	20	18	16	19	18	22	15	-

< 2-29 >

-

4

< 2-13 >



- A (27)
- B (23~26)
- C (20~22)
- D (19)

< 2-13 >

가 27 (36)

가



4.2.

/ 2019. 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2019. 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가
/ 2019. 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 • " " , , , , ,
/ 2016. 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2017.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 • " " 가 . . .
/ 2015.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018. 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가 가
/ 2017.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 2017.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12 2 ,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3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4.4.

「

」

	•
	• " " 가
	• 가 • • • •
	• 6
가	• 가
	•
	•
	< 2-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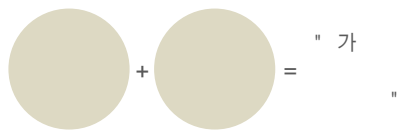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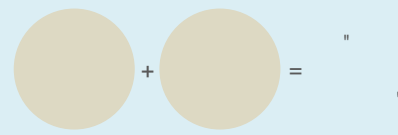
< 2-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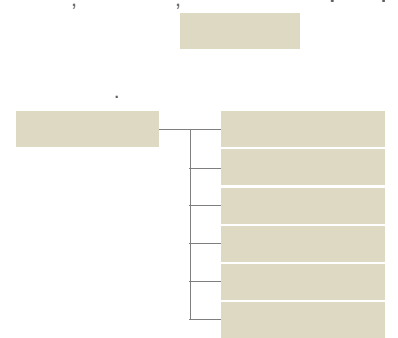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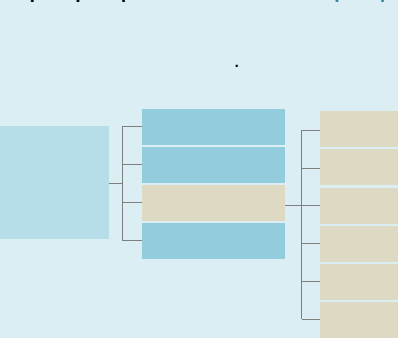
	• , ,
	•
	• , ,
	• 27 , 28 , 40
	•
	•
	< 2-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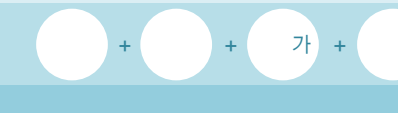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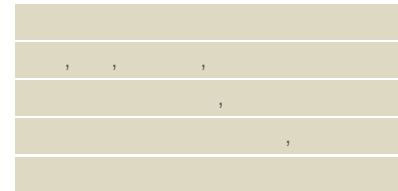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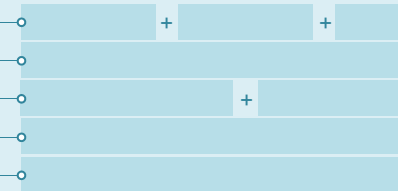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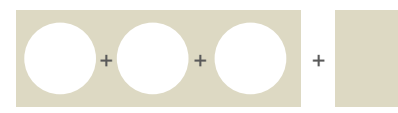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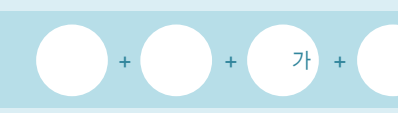
1.

1.1.

-)" (: /

- 
- 
- ()


- 
- /

 -
 -
 -
 -
 -
- 
- 
- 
- 
- 

, (), 가,

1.2.

6 1

가, " ")

4 (" 가 ")

가 . . .

		,가
		가 ,가

< 3-01 >

31 .

가

(2010/) " " 가 . . .

가 .가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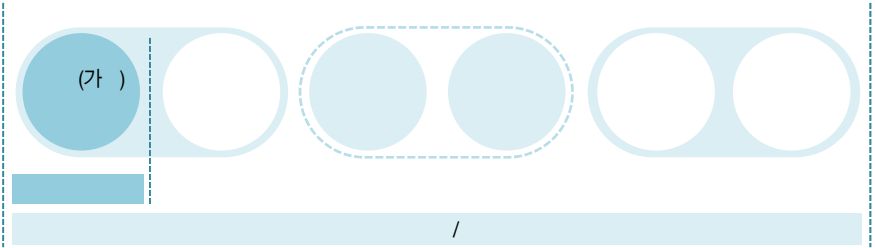
		가	
	가	가	
		가	

< 3-02 >

가

		가
	가	가 . ()
	 (.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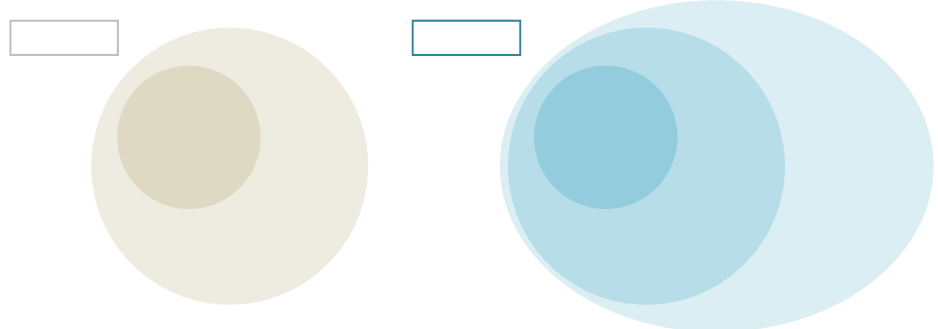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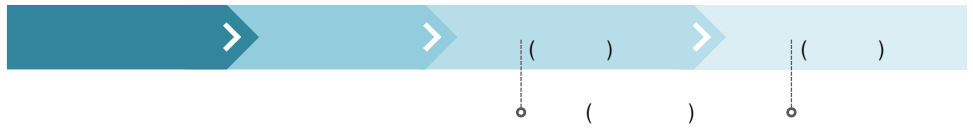
< 3-03 >



< 3-01 >

2.

6



5가

2

1 (2019 ~ 2023)	2 (2024 ~ 2028)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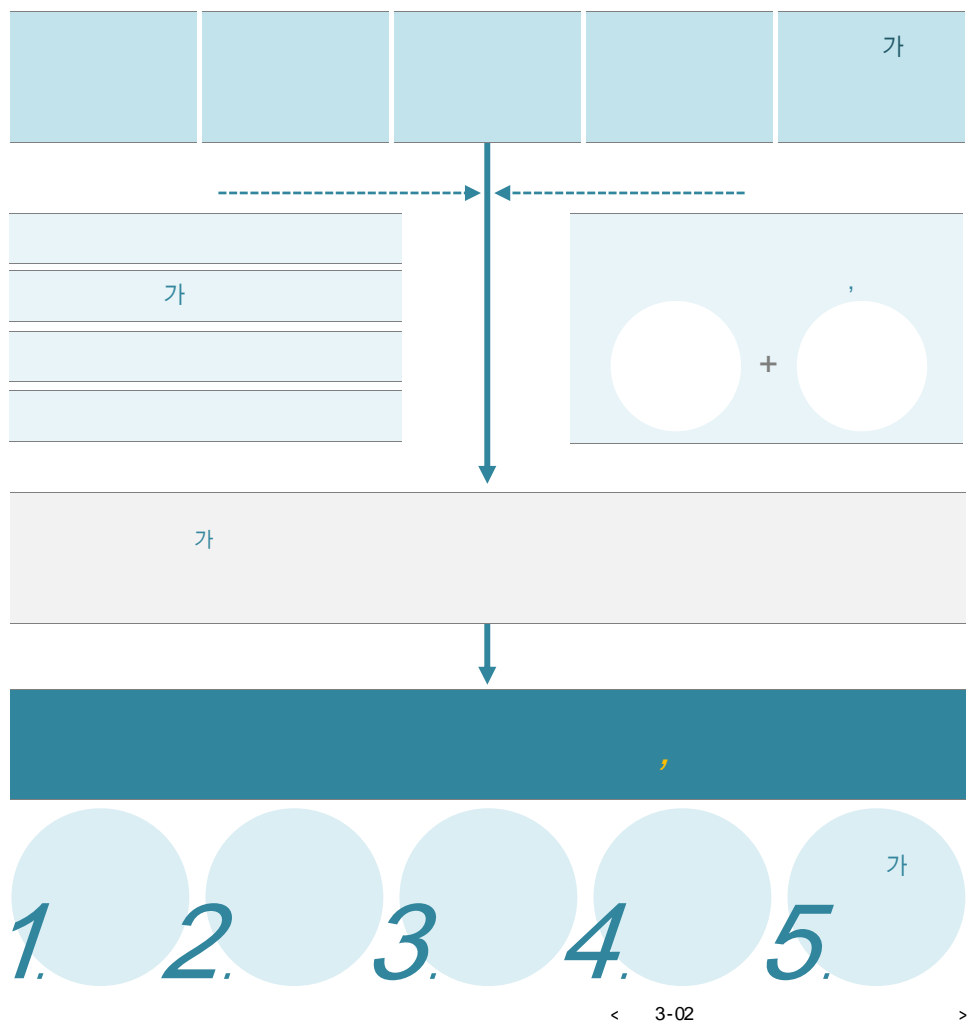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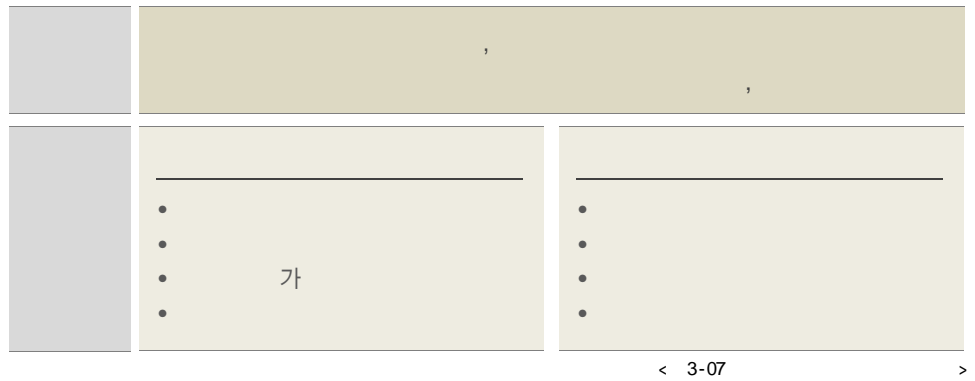
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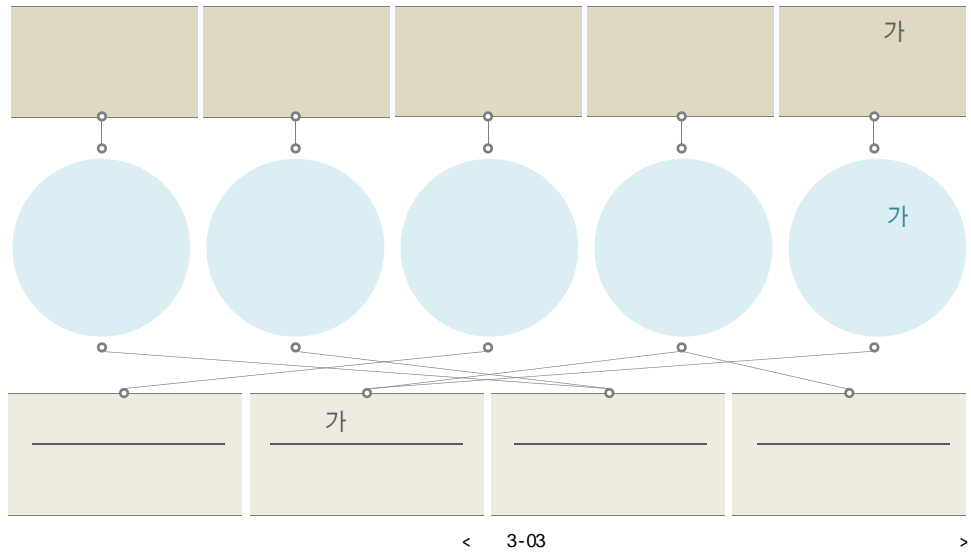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p style="text-align: center;">R&D</p>
< 3-05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 • • • 			
	_____	가 _____	_____	_____
< 3-06 >				

3.2.



3.3.



- 1.**

 - 1-1 :
 - 1-2 :
- 2.**

 - 2-1 : 가
 - 2-2 : , , 가
- 3.**

 - 3-1 : 가
 - 3-2 :
- 4.**

 - 4-1 :
 - 4-2 :
- 5.** 가

 - 5-1 :
 - 5-2 :

1


가

1-1 :

- 가
- , 가, , , 24 , (가),
- , (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CCTV	/	가
--------	---	---



< 3-04 가 >

1-2 :

- 가 4-3()
- 가
- , 가
- , (Pocket Park)



< 3-05 >

2

2-1 : 가

- , , ,
- (公共)
- 가 () , ,
- , , 가
- , ,



< 3-06 >

2-2 : , , 가 (Barrier Free) (Universal Design)

- , 가 , 가
- 가
- , , 가 , , 가
- 가

(Universal Design)						
Equitable Use 가	Flexible in Use	Simple, Intuitive Use	Perception Information 가	Tolerance for Error 가	Low Physical Effort 가	Size & Space for Use

< 3-07 >

3

3-1 : 가 가

- 가 가
- 가 가
- 가



3-2 :

- , , 가 , 가
- , 가 가 , , ,
- 가
- , ,
- ,



4.

가

4-1 :

- , ,
- , 가 ,
- ,
- () ,

가 (Eco) “ ”

--	--	--	--	--	--



< 3-10 >

4-2 :

- (Pocket Park), 가 ,
- 가
-
-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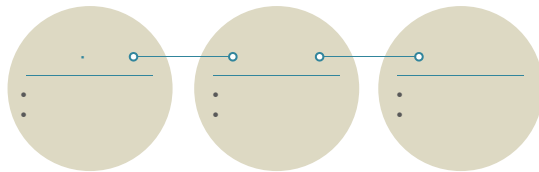


< 3-11 >

5. 가

5-1 :

- . , , ,
- 가 ,
- () ,
- .



- (2019.1.1. /)
- (2017.6.20. /)
-
- 1 / 1 / 1
-
- (2015.12)

< 3-12 >

5-2 :

- , ,
- , ,
- 가
- 가 ,



< 3-13 >

V. 공공디자인 실행계획

1. 실행계획의 개요	255
2.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256
2.1.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 방향	256
2.2.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257
2.3.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263
3.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68
3.1. 시범사업의 개요	268
3.2.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안)	271
3.3. 경기도 지원사업 연계방안	272
3.4. 문화관광부 지원사업 연계방안	273
3.5. 시범사업 디자인 예시안	274
4. 운영체제 개선(안)	281
4.1.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방안	281
4.2. 전담부서 운영(안)	292
4.3. 경기도 공공시설물 인증제 활용방안	293
4.4. 공공디자인 교육방안	295

1. 실행계획의 개요

개요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용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양평군 내 공공디자인 관련 행정기반이 미흡하여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 양평군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은 진흥계획의 비전, 추진전략을 구현하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전담조직, 운영체계 등의 행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제시한다.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의 방향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관계획과의 정합성을 유도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개정 및 전담조직 안정화를 위한 행정기반의 확장 방안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능동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 광역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도 연계 등의 활용방안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행정기반 확장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공공디자인법에 근거한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2019. 1. 1) 개정 :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개정 • 전담조직 및 네트워크 :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의 개선방안 (직제상 위치 및 인력 구성 등)
진흥계획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 양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내 권장사례로 활용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양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을 유도하는 이용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방안 :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및 자문과정 개선(안) 마련 • 광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연계방안 :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의 활용방안 마련 :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도 활용방안 마련

(표 5-01 양평군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의 방향)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의 수단

구분	주요 내용
경관계획과의 연계	2015년 수립된 양평군 경관계획 중 공공디자인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과 경관계획과의 정합성을 유도한다. * 단, 일부 상이한 내용은 경관계획 이후 업데이트를 고려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따라야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	현재 시행중인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및 시행규칙을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자문심의 대상의 항목을 개선한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내 권장사례로 활용한다.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 설계, 제작, 설치, 관리 등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운영하여 공공디자인법 제10조에서 제시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준수를 유도한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활용	양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활용 주체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가이드라인의 능동적인 활용을 유도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활용	경기도(광역)에서 31개 시·군(기초)을 대상으로 개발한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매뉴얼, 표준디자인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설치빈도가 높은 공공시설물의 경우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유사제품을 권장하여 도시 전체 디자인 품질의 제고를 유도한다.

(표 5-02 양평군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의 수단)

2.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2.1.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 방향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의 필요성

-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년 1월 일부개정)되고 상위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상위계획을 준용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정된 근거법에 부합하는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 현재 시행 중인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2019. 1. 1/도시과)를 토대로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개정이 필요하며, 근거법을 준용하여 일부 항목의 개정이 필요하다.

양평군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현황

- 양평군에서 운영중인 자치법규 중 공공디자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례는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포함하여 2019년 04월 현재 6건이 시행 중에 있다.

명칭	주요 내용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2019. 1. 1 / 건축과)	양평군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유도
양평군 경관 조례 (2018. 11. 5 / 건축과)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의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도시환경 조성 유도
양평군 자연경관 보전조례 (2019. 1. 1 / 환경과)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28조,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절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018. 11. 5 / 건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18. 11. 5 / 문화체육과)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단,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 제외)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2015. 10. 12 / 장애인복지팀)	양평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 규정

〈표 5-03 양평군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현황〉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방향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의 명칭을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근거법에 대한 명시를 통해 연계성을 부여한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와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지자체에 위임하는 사항들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여 양평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유도한다.
- 조례 시행규칙에 첨부하는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을 개정하고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요소별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여 안전 작성주체(민간), 위원회, 전담부서 및 관련 기관(행정조직) 등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조례 명칭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
심의 및 자문대상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의 별표 1로 첨부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협의, 자문, 심의 대상을 토대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개정
심의 및 자문기준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시 양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표 5-04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방향〉

2.2.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평군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간·건축물·시설물·용품·시각정보 등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계획·조사·분석·자문·설계·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설계·조성·제작·설치 시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군정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제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방향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방향에 관한 사항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군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할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 위원회 등

제8조(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9조에 따라 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법15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문 사항

4.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군 경관조례에서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나. 공원 및 휴양공간

다. 공공디자인 환경 개선을 목적을 사업을 시행하는 가로공간

라. 교량, 보도육교, 고가차도, 지하차도, 터널 및 생태통로 등의 도시기반시설물

마. 군을 상징하는 CI, BI, 캐릭터 등의 군 시각정보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2. 경기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또는 경기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기존 시설물 등의 단순 보수, 경미한 교체 등으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4.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에서 심의 대상 공공시설물 등의 수량 또는 면적이 작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공시설물 설치사업 중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만을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6.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공사 및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균형 발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관광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 ③ 위촉직위원은 도시계획, 공간·시각·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안건 심의 등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② 소위원회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하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 사업 등

제18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읍·면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면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소관 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업무협약)

- ① 군 각 부서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군 각 부서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는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은 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외에 군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으로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제8조 관련)

다음 각호의 대상에 대한 디자인(형태, 색채, 재료, 조명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공공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가로공간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장애물존 등 나. 어린이·노인·마을주민 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교차로, 횡단보도 등 다.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적용 가로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공공기관 청사, 읍·면사무소, 공공교육·연구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주민복지센터),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 공연장, 전시관, 홍보·기념관 등	
	교통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요금소 등	
	환경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기타	군 및 군 출연·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도로시설물	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터널, 생태통로, 입체교차로 등	
	도로부속시설물	보도육교, 지하보도, 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옹벽 등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보관대, 교통차단·억제물, 주차 관련 시설물, 교통량 감지기 등	
	보행안전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블라드), 펜스(교량용, 자전거도로용 포함), 가드레일, 가로등, 보행등, 보안등, 공원등, 배수구 덮개 등	
	편의시설물	벤치, 파고라(쉼터 포함), 휴지통, 음수대, 가로판매대, 무인 키오스크, 공중전화부스, 인포메이션부스,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	맨홀, 소화전, 가로등제어함, 교통신호제어기, 방재시설(제설함 포함),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	
	녹지시설물	가로수(수목) 보호대, 가로화분대, 분수대 등	
	안내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 벽보판	
	기타	군 및 군 출연·출자기관에서 설치하는 그 밖의 공공시설물에 준하는 사항	
공공매체	정보매체 (안내시설물)	가. 관광안내표지, 종합안내표지, 시설방향유도표지, 현수막 게시대 등 나. 공공건축물 건물명표지, LED 전광판, 주차안내표지, 실내안내표지 등 다. 버스노선안내도, 구조물명칭표지, 각종 픽토그램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공사장 가설울타리) 등	
		공공미술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벽화, 슈퍼그래피, 미디어아트 등
		시각이미지	군 상징물(CI, BI, 캐릭터, 서체, 패턴 등)

2.3.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 요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군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신청서(별제 제1호 서식)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업무협의를 마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과를 회신한다.

1. 원안동의 : 의견이 없는 경우
 2. 보완 : 의견이 있는 경우
 3. 심의자문대상 : 양평군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화재 복원공사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제2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①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하려는 군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한 결과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터키) 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시기)

① 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확정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안건에 올리는 사항은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방법)

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컨셉 등)
3. 디자인 시안(기본설계도, 예상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유지보수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제5조(의결의 형식)

-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 가결, 재심의로 구분한다.
- 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 번 개최하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조치계획 회신 등)

위원회 심의·자문결과는 해당 부서 및 공공기관으로 회신하며, 해당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결과 조치계획서			
담당부서 (또는 기관)	부서명		연락처
	팀명		
	담당자		직위(직급)
사업명		심의결과	
제 호			
심의(자문)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1.			반영 또는 부분반영
2.			
3.			

부서의견 불가 시 사유 기재 등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비고	
----	--

3.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3.1. 시범사업의 개요

개요

-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양평군 전체의 공공디자인 환경 제고를 유도한다.
- 양평군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양평군 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기·중기경관사업 대상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의 공공디자인 환경 개선은 물론 국가 지원사업의 참여를 통해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으로 진행하였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중 군민의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및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은 읍·면별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지속하여 도시 전체의 공공디자인 환경 개선을 권장한다.

단계별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안

- 양평군 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안(p.356)을 토대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구분하여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검토한다.

공공디자인 관련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대상지	형태
단기 (2016~2017)	옥외광고물	읍면별 중심시가지 옥외광고물 경관개선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관리/형성
		국도 주변 옥외광고물 경관 관리사업	6번, 44번, 37번 국도변	관리
	색채	색채경관 시범사업(1차) : 농촌	시범사업 대상지	형성
	가로	유니버설디자인 가로 시범사업(1차)	시범사업 대상지	형성
	시설물	공공시설물 통합설계 시범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형성
	CPTED	CPTED 시범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형성
	진입부	진입부 거점경관 형성 시범사업	12개 진입부 경관거점	관리/형성
	도로	양평교 및 양근대교 남단 가로경관 개선사업	강상면	형성
	시가지	읍면별 중심시가지 경관형성 사업(1차)	청운·개군·강상면, 양평읍	형성
	역사문화	양평전통시장 경관 개선사업	양평읍	형성
	야간	양평군 야간경관 기본계획	양평군 전체	관리
			진출입 경관거점 야간경관 개선사업	양서면, 청운면, 용문산관광지
		교육/홍보	공무원 대상 경관교육	양평군 전체
		경관 관련 위원회 위원 대상 경관교육	경관 관련 위원회 위원	-
	경관 관련업 종사자 대상 경관교육	토목, 건축, 옥외광고물, 시설물 등	-	
중기 (2018~2019)	수변	두물머리 일대 경관 개선사업	양서면	관리/형성
	옥외광고물	역사문화공간 옥외광고물 경관개선 시범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관리/형성
	색채	색채경관 시범사업(2차): 도로변	시범사업 대상지	형성
	시가지	읍면별 중심시가지 경관형성 사업(2차)	단월·강하·지평·서종면	형성
		지평역-지평사거리 주변 가로경관 개선사업	지평면	형성
	가로	유니버설디자인 가로 시범사업(2차)	시범사업 대상지	형성
		단월·명성교차로 진입부 경관형성사업	단월면	형성
	진입부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진입부 개선사업	양평군 전체	형성
	오픈스페이스	양평읍·강상면 야간경관 형성사업	양평읍, 양서면(중점경관관리구역)	형성
			양수리 야간경관 형성사업	양서면
	교육/홍보	시민 대상 경관교육	-	-
장기 (2020)	수변	월산·대평저수지 일대 경관 개선사업	지평면	관리
	색채	색채경관 시범사업(3차) : 상업가로	시범사업 대상지	형성
	시가지	읍면별 중심시가지 경관형성사업 (3차)	양서·용문·옥천·양동면	형성
	야간	진출입 경관거점 야간경관 개선사업	양서면, 청운면, 용문산관광지	형성
	계획	양평군 경관계획 (2021 ~ 2025)	-	-

〈표 5-05 양평군 단계별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안〉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세부과제

-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 5가지 추진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 중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양평군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검토한다.

사업명	추진체계			추진일정 (연도)						
	주관	광역	기초	공공	18	19	20	21	22	
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1-1.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1-1-1. 마을단위 범죄예방 통합 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 적용	문체부		●		18	19	20	21	22	
1-1-2. 학교 폭력예방 통합 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 적용	문체부, 교육청		●							
1-1-3. 여성 폭력예방 및 안심디자인	문체부, 여가부		●							
1-2. 교통안전 디자인										
1-2-1. 어린이 교통안전 통합 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문체부, 행안부, 교육청	●	●							
1-2-2.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및 시범적용	문체부	●	●	●						
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2-1.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공간 조성										
2-1-1.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 조성	문체부, 국토부	●	●		18	19	20	21	22	
2-1-2. 모든 이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문체부	●	●	●						
2-2.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2-2-1. 장애인 문화시설 이용 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문체부	●	●	●						
2-2-2. 고령자를 위한 인자건강 디자인 및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문체부	●	●							
2-3.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2-3-1. 고령자·시각장애인이 이용이 편한 행정웹사이트 개선	문체부	●	●	●						
3.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3-1.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3-1-1. 통합형 보행자 길 찾기 디자인 및 시범조성	문체부	●	●		18	19	20	21	22	
3-1-5. 전문상점가로 활성화를 위한 안내체계 디자인	문체부		●							
3-2.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3-2-1. 지하공간 안내체계 개선 디자인	문체부	●	●	●						
3-2-2. 버스 환승센터 플랫폼 통합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문체부	●	●							
3-2-3. 터미널 안내체계 개발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	●	●						
3-3.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 시설 만들기										
3-3-1. 대형 체육시설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보급	문체부	●	●	●						
3-3-2. 탐방로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문체부	●	●	●						
3-3-3.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문체부	●	●	●						
3-4. 이용하기 좋은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3-4-1.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건소 실내 공간디자인	문체부, 복지부		●							
4.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4-1.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4-1-1. 동마을 단위 시각이미지 디자인 및 시범조성	문체부, 행안부, 국토부		●		18	19	20	21	22	
4-1-2. 주민들이 행복한 주거공간 디자인	문체부		●							
4-1-3. 미래문화유산이 될 멋진 골목 보존 가이드라인	문체부	●	●							
4-2.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4-2-1. 도시 주요 공간 공공시설물 통합 개선	문체부	●	●							
4-2-2. 지자체 접경 지역 공공시설물 공동개발 및 설치	문체부	●	●							
4-2-3. 지역축제 공간과 시설물 개선 공공디자인	문체부	●	●							
4-3.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4-3-1. 썬지공원, 노후 어린이공원 활성화 디자인 개선	문체부	●	●							
4-3-2. 공개공지 연계 이미지 활성화 디자인	문체부	●	●							
4-4.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4-4-1. 문화·관광자원 품격향상 개선 환경조명 디자인	문체부, 문화재청	●	●	●						

〈표 5-05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기초단체 대상 세부실천과제〉

경기도 지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준공사례

■ 다문초등학교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중앙2길 27 다문초등학교 일원
- 면적 : 약 8,966.63m² (다문북길, 다문중앙1~2길, 용문로 373번길, 용문로 353번길)
- 목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심통학로를 조성하여 상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고



〈그림 5-01 다문초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사례〉

■ 원덕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원덕1리 일원
- 면적 : 약 118,247m² (원덕1리 전체 면적 : 약 506,082m²)
- 목적 :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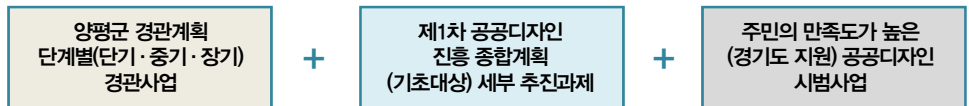


〈그림 5-02 원덕리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사례〉

3.2. 시범사업 선정(안)

단계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안)

- 양평군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양평군 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경관사업,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과제, 경기도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군민의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 시범사업 선정의 우선순위는 유사사업 시행 여부 및 읍면별 공공디자인 현황 진단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복예산의 투입을 방지하고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 및 양평군 전체 공공디자인 환경의 균형감 있는 발전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양평군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안)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전략 키워드인 안전, 배려, 편의, 품격, 행정을 기호화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안전 배려 편의 품격 행정

구분	사업유형	사업명	대상지	추진전략	
단기 (2019~2020)	생활권도로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1-2-1. 어린이 교통안전 통합 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개군초, 지평초	안전 배려	
	생활권도로	읍면별 시가지 내 보도 개선사업 ★2-1-1.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 조성	강상면, 청운면	안전 배려 편의	
	생활권도로	공공시설물 통합설계 시범사업 ★4-2-1. 도시 주요 공간 공공시설물 통합 개선	양평읍 시가지	품격 행정	
	생활권도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1-1-1. 마을단위 범죄예방 통합 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사업	청운면, 강하면	안전 배려	
	지동차중심도로	보도육교 색채 개선사업 ★4-2-1. 도시 주요 공간 공공시설물 통합 개선	양서면	품격	
	지동차중심도로	도시 진입경관거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4-2-2. 지자체 접경 지역 공공시설물 공동개발 및 설치	6번·44번 국도	품격	
	생활권도로	양평전통시장 공공정보매체 개선사업 ★3-1-5. 전통상점가로 활성화를 위한 안내체계 디자인	양평물맑은시장	편의 품격	
	건축물공간	시외버스터미널 안내체계 개선사업 ★3-2-2. 버스 환승센터 플랫폼 통합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3-2-3. 터미널 안내체계 디자인	양평읍, 용문면	편의 품격	
	중기 (2021~2022)	조경공간	두물머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3-3-3.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두물머리 일대	편의 품격
		생활권도로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1-2-1. 어린이 교통안전 통합 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서중초, 강하초	안전 배려
생활권도로		읍면별 시가지 내 보도 개선사업 ★2-1-1.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 조성	서중면, 강하면	안전 배려 편의	
건축물공간		지평역-지평사거리 주변 가로경관 개선사업 ★1-1-1. 마을단위 범죄예방 통합 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사업	지평면	안전 배려	
건축물공간		공공건축물 내부 편의공간 개선사업 ★2-2-1. 장애인 문화시설 이용 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양평군 전체	배려 편의	
조경공간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진입부 개선사업 ★4-2-3. 지역축제공간과 시설물 개선 공공디자인	강상체육공원	품격	
장기 (2023~)	조경공간	관광지 진출입부 야간경관 개선사업 ★4-4-1. 문화관광자원 품격향상 개선 환경조명 디자인	용문산, 두물머리	안전 편의 품격	
	건축물공간	공용주차장 디자인 개선사업 ★1-2-2. 공용주차장 안전디자인 및 시범적용	양평읍, 양서면	안전 편의	

〈표 5-07 양평군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안)〉

3.3. 경기도 지원사업 연계방안

어린이 안심통학로 시범사업 예시

■ 지평초등학교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107 지평초등학교 일원 (지평사거리 반경 250m)
 - 목적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안심통학로를 조성하여 어린이는 물론 거주민의 상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고
- 기존 양평읍과 용문면에서 시행했던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양평군 전체의 균형감 있는 개발을 위해 지평면을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생활권도로의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공공디자인 환경을 조성한다.
 - 지평역을 이용하여 통학 및 출퇴근하는 거주민의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지평역 - 지평사거리를 대상으로 야간에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그림 5-03 경기도 지원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예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예시

■ 청운면 용두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일원 (농촌주거지)
 - 목적 : 일몰 시 대상지 일대의 조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외부 활동이 어려운 농촌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설계를 도입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기존 양평읍 원덕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토대로 청운면에 확장 적용하여 농촌주거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 대상지 일대의 조도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각종 지장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눈높이에서 개방적인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공간구조로 개선한다.
 - 대상지 일대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벽면 등을 재도색하여 안전마을의 영역성을 강화시킨다.



〈그림 5-04 경기도 지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예시〉

3.4. 문화관광부 지원사업 연계방안

기초대상 세부과제 연계방안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추진과제 중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제의 내용과 양평군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연계한 연차별 지원사업으로 활용함으로써 군비의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한다.
- 시범사업의 일관된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시켜 사업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양평군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장기 지원사업의 선도 모델로 육성한다.

1	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1-1.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1-1-1. 마을단위 범죄예방 통합 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 적용
	1-1-2. 학교 폭력예방 통합 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 적용
	1-1-3. 여성 폭력예방 및 안심디자인
	1-2. 교통안전 디자인
	1-2-1. 어린이 교통안전 통합 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1-2-2.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및 시범적용
	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2-1.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공간 조성
2	2-1-1.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 조성
	2-1-2. 모든 이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2-2.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2-2-1. 장애인 문화시설 이용 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2-2-2. 고령자를 위한 인자건강 디자인 및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2-3.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2-3-1. 고령자·시각장애인이 이용이 편한 행정웹사이트 개선
	3.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공공디자인
	3-1.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
	3
3-1-5. 전문상점가로 활성화를 위한 안내체계 디자인	
3-2.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개선	
3-2-1. 지하공간 안내체계 개선 디자인	
3-2-2. 버스 환승센터 플랫폼 통합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3-2-3. 터미널 안내체계 개발	
3-3. 이용하기 쉬운 체육관광 시설 만들기	
3-3-1. 대형 체육시설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보급	
3-3-2. 탐방로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3-3-3.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3-4. 이용하기 좋은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3-4-1.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건소 실내 공간디자인	
3	4.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4-1.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4-1-1. 동마을 단위 시각이미지 디자인 및 시범조성
	4-1-2. 주민들이 행복한 주거공간 디자인
	4-1-3. 미래문화유산이 될 멋진 골목 보존 가이드라인
	4-2.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4-2-1. 도시 주요 공간 공공시설물 통합 개선
	4-2-2. 지자체 접경 지역 공공시설물 공동개발 및 설치
	4-2-3. 지역축제 공간과 시설물 개선 공공디자인
	4-3.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디자인
4-3-1. 썬더공원, 노후 어린이공원 활성화 디자인 개선	
4-3-2. 공개공지 연계 이미지 활성화 디자인	
4-4. 밤에도 품격있는 문화관광 환경조명 디자인	
4-4-1. 문화·관광자원 품격향상 개선 환경조명 디자인	



- 지원 사업명 : 양평 시외버스터미널 안내체계 개발
- 공간적 범위 : 양평 시외버스터미널 (용문 포함)
- 내용적 범위 : 건물사인, 도로사인, 방향유도사인, 승하차안내사인, 버스정보안내사인, 시설안내사인 등의 안내체계의 위계를 정립하여 각 사인별 표준디자인 개발



- 지원 사업명 : 양평읍 중심 시가지
- 공간적 범위 : 군청, 양평역, 터미널을 포함한 시가지
- 내용적 범위 : 대상공간 내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도시자원의 공공공간의 위계를 형성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가로공간 개선 (양평군 가로공간의 표준형 개발)



- 지원 사업명 : 양평읍 중심 시가지
- 공간적 범위 : 군청, 양평역, 터미널을 포함한 시가지
- 내용적 범위 : 2단계 사업결과를 토대로 개선된 공공시설물의 통합 개선을 통해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정보안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품격있는 공공디자인환경 조성

〈그림 5-05 문화관광부 지원사업 연계 연차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예시〉

3.5. 시범사업 디자인 예시안

3.5.1. 양평군 공공건축물 화장실 기본형

개요

■ 공공건축물 내부 편의공간 개선사업 관련

- 공공건축물 내부의 대표적인 편의공간으로서 내부 직원은 물론 외부 방문객이 이용률이 높아 관련 법령 및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의 설계기준을 준용한 양평군 공공건축물 내부 화장실의 기본형을 마련한다.
- 양평군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안) 중 공공건축물 내부 편의공간 개선사업 시행 시 본 예시안을 활용하여 대상 공공건축물의 현황에 맞추어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인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화장실을 조사한 결과 각각 다른 규모, 배치, 마감재 등이 적용되어 있어 도시차원에서 표준화된 설계 기본형이 필요한 상황이다.
- 단차가 있는 출입문, 좁은 부스 및 통로,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장애인화장실, 청소도구 및 설비의 직접적인 노출 등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은 시설 등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 대부분의 화장실이 매우 협소한 규모로 계획되어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규격 및 이용자의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개선하고 시각적으로 확장감을 부여할 수 있는 마감계획이 필요하다.



▲ 읍·면사무소의 화장실 출입문 현황



▲ 읍·면사무소의 화장실 내부 킴막이 현황



▲ 읍·면사무소의 화장실 내부 세면대 현황

〈그림 5-06 양평군 공공청사 내부 화장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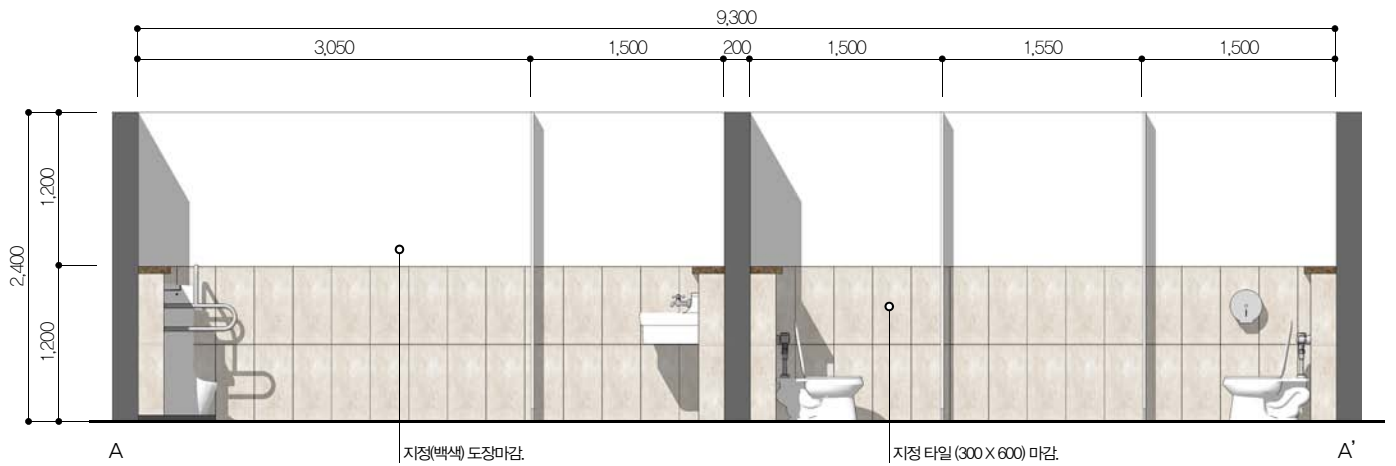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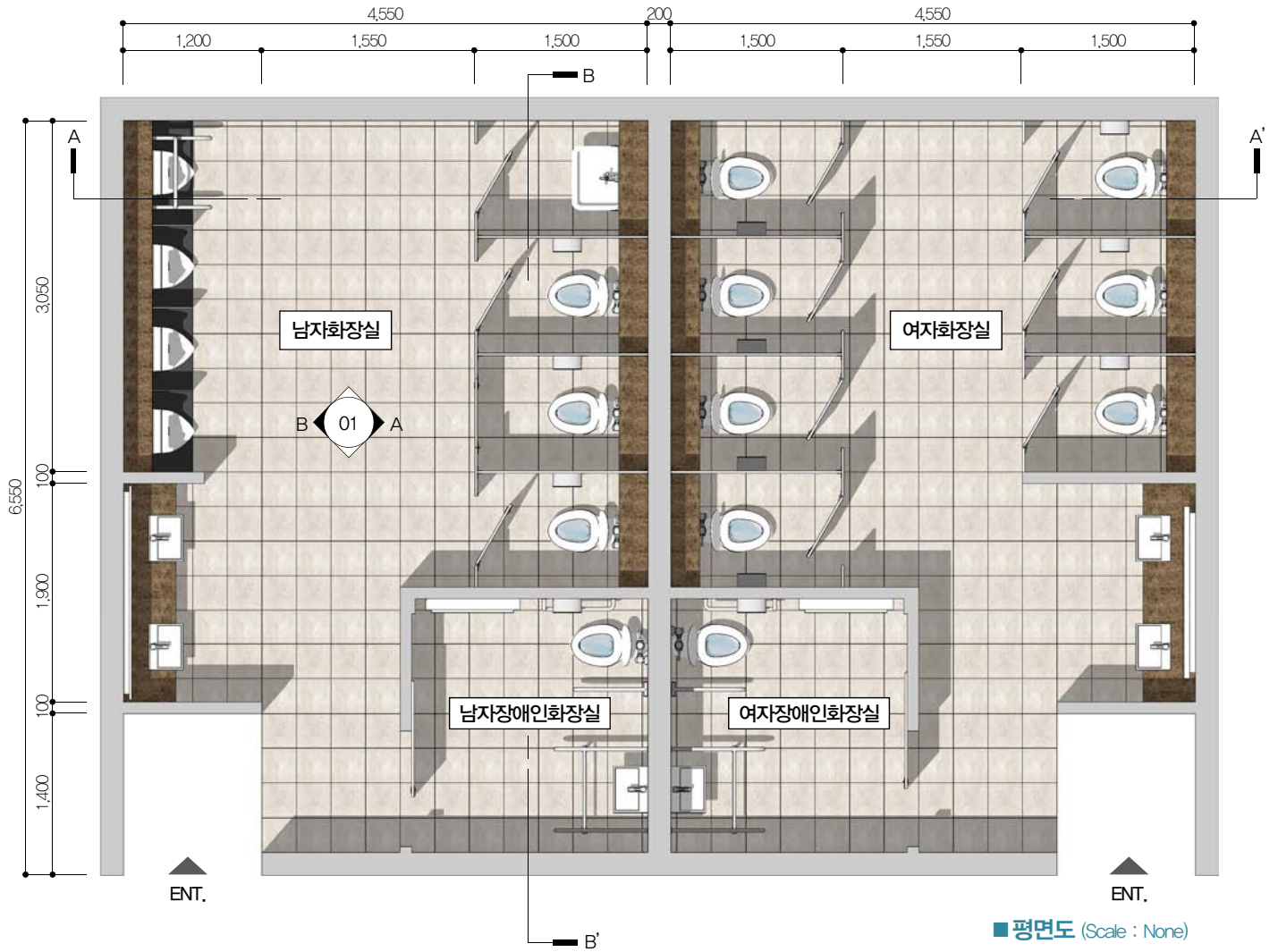
관련 법령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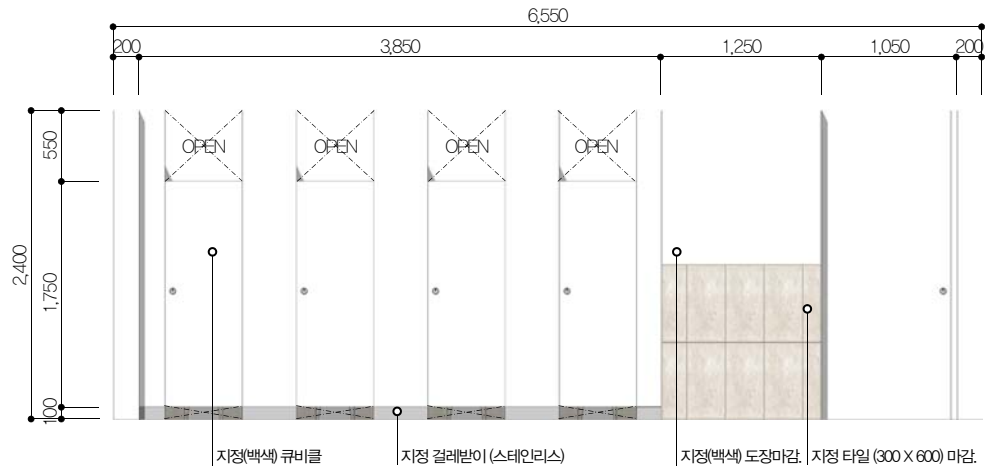
- 시범사업 시행 시 관련 법령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No.	위계	내용	주체
1	법령	건축법	국토교통부 (2019.4.23)
2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016.8.12)
3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 7. 26)
5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2018. 3. 28)
6	자치법규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양평군 (2018. 8. 10)
7	광역계획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10)
8	광역계획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11)
9	관련계획	양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건축물공간)	양평군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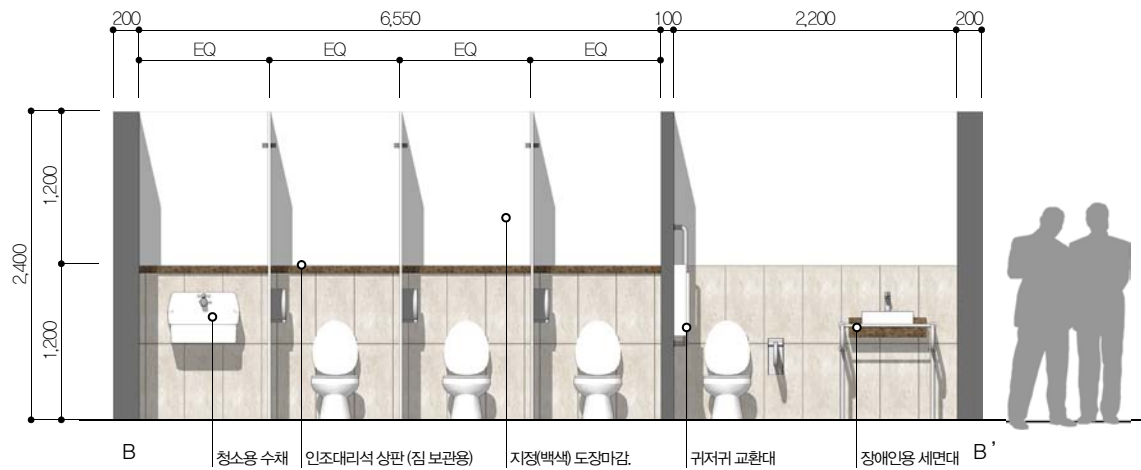
〈표 5-08 공공건축물 내 화장실 관련 법령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 시범사업
■ 예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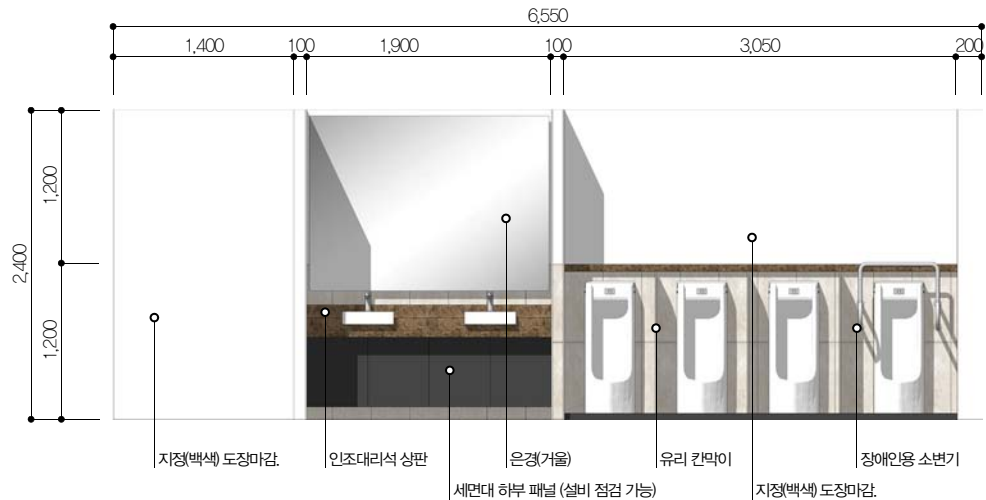




■ 입면도 A (Scale :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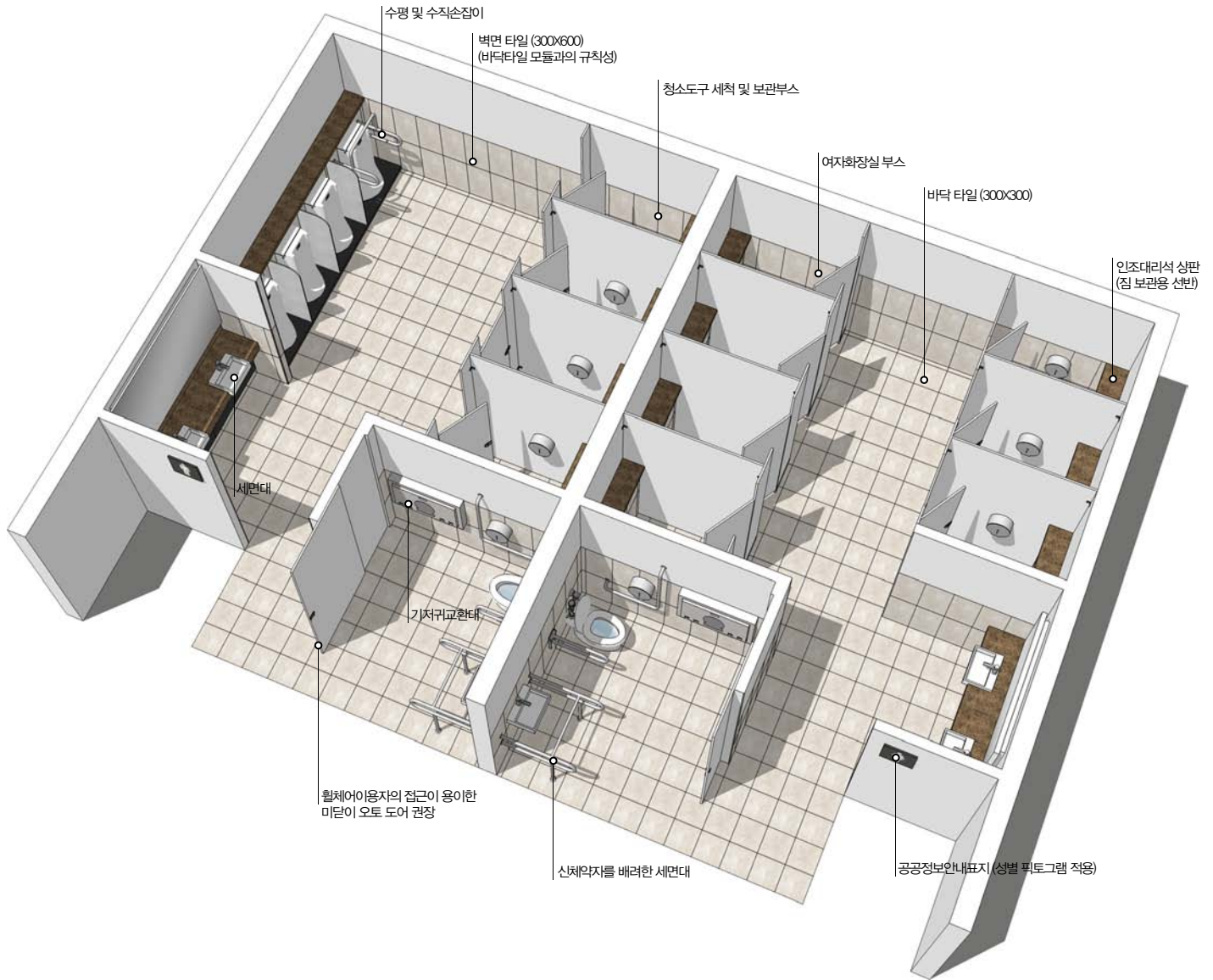


■ 단면도 B (Scale :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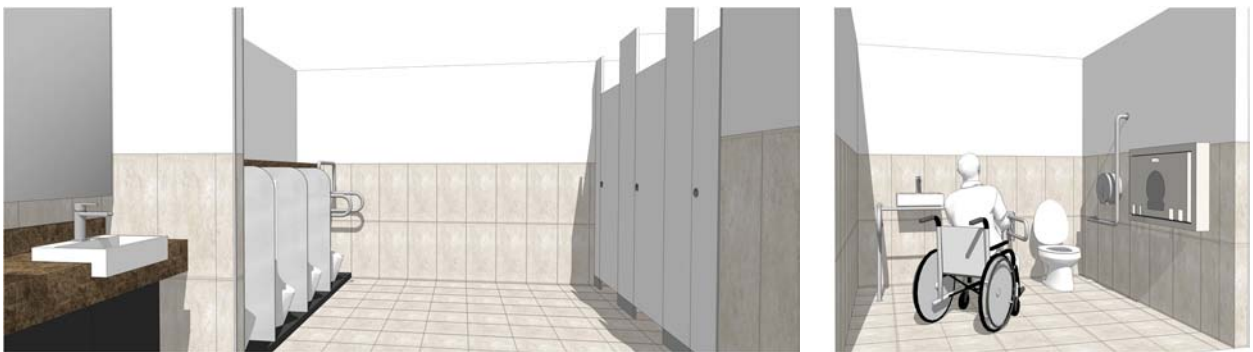


■ 입면도 B (Scale : None)

■ 시범사업
■ 예산안



■ 예상 조감도 이미지



■ 공간별 예상 이미지

3.5. 시범사업 디자인 예시안

3.5.2. 양평군 회전교차로 기본형

개요

■ 읍면별 시가지 내 보도 개선사업 관련

- 최근 교통정온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평군 내에서 회전교차로 조성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시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설계 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법령 및 설계지침을 준용한 양평군 회전교차로 기본형을 마련한다.
- 양평군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안) 중 읍·면별 시가지 내 보도 개선사업, 가로경관 개선사업,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등과 같이 교통정온화가 필요한 사업 시행 시 본 예시안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현황에 맞추어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양평군 내에 조성되어 있는 회전교차로의 경우 원형 교통섬의 크기(지름), 교통섬 내부의 식재 및 시설물 설치기준, 화물차턱의 폭과 포장재로 등이 각각 상이하여 도시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설계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 대형 차량의 주행 시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화물차턱의 경우 관련 설계지침과 상이한 조성사례가 많다.



▲ 양평군청 앞 회전교차로 현황



▲ 양수역 앞 회전교차로 현황



▲ 양평시의외버스터미널 인근 회전교차로 현황



▲ 강상면 양근대교 남단 회전교차로 현황



▲ 양동면 동양평C 인근 회전교차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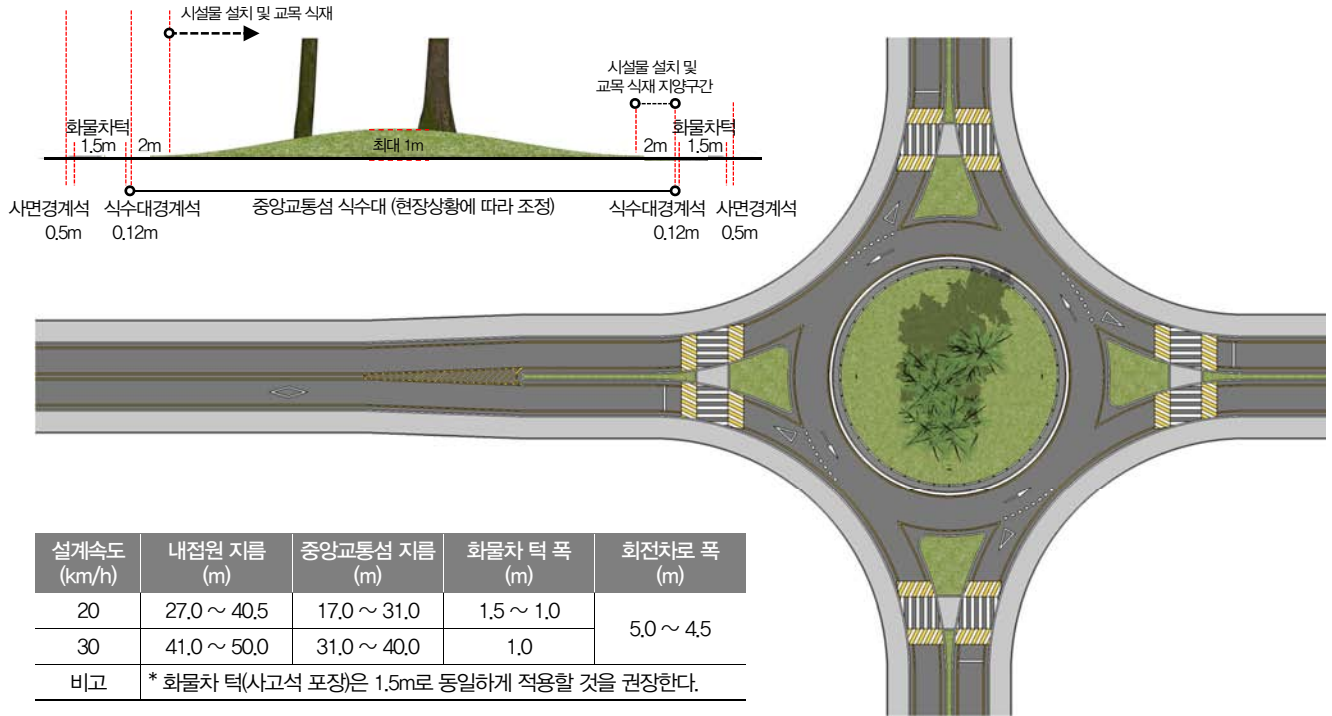
(그림 5-07 양평군 내 회전교차로 조성 현황)

관련 법령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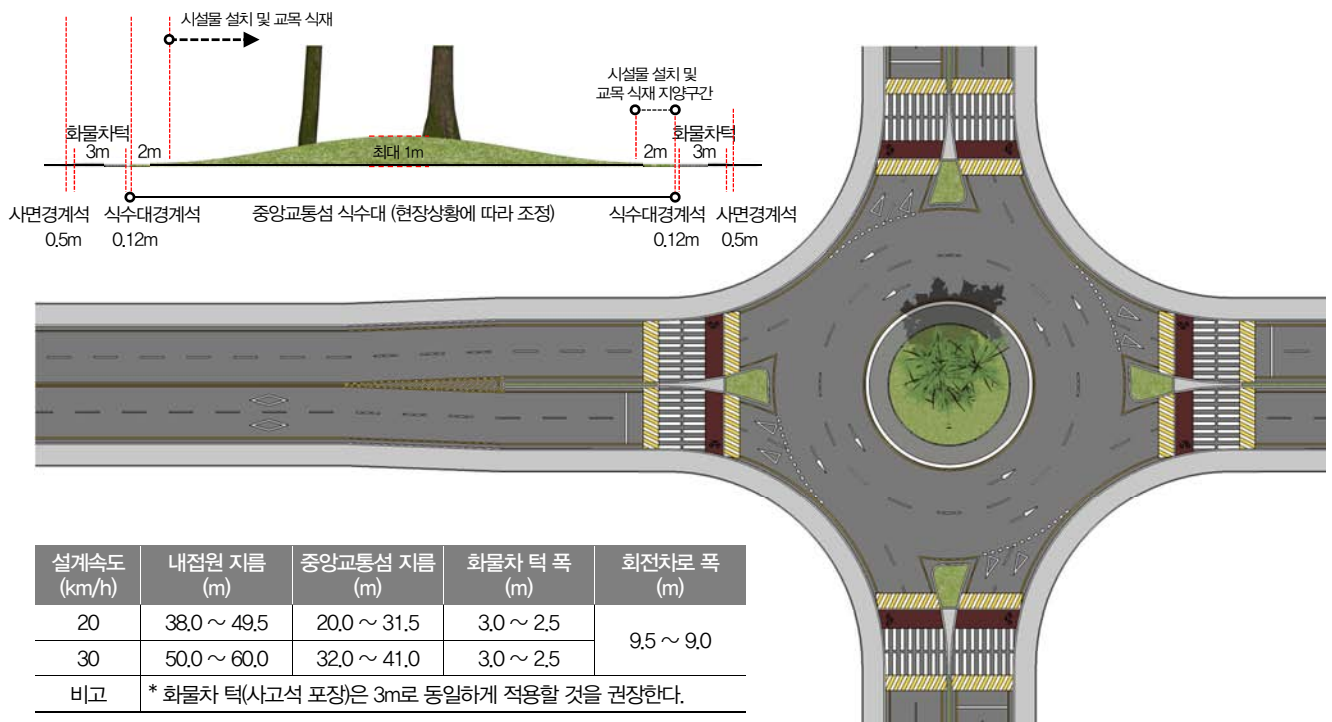
- 시범사업 시행 시 관련 법령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No.	위계	내용	주체
1	법령	도로교통법	경찰청 (2018.12.24)
2	법령	도로법	국토교통부 (2018.12.18)
2	법령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15.7.7)
3	법령	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15.11.16)
5	행정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9.1.1)
6	행정규칙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9.2.1)
7	설계지침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2017.12)
8	관련계획	양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생활권도로)	양평군 (2019)

(표 5-09 회전교차로 관련 법령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 1차로형 회전교차로 평면 및 단면 (Scale :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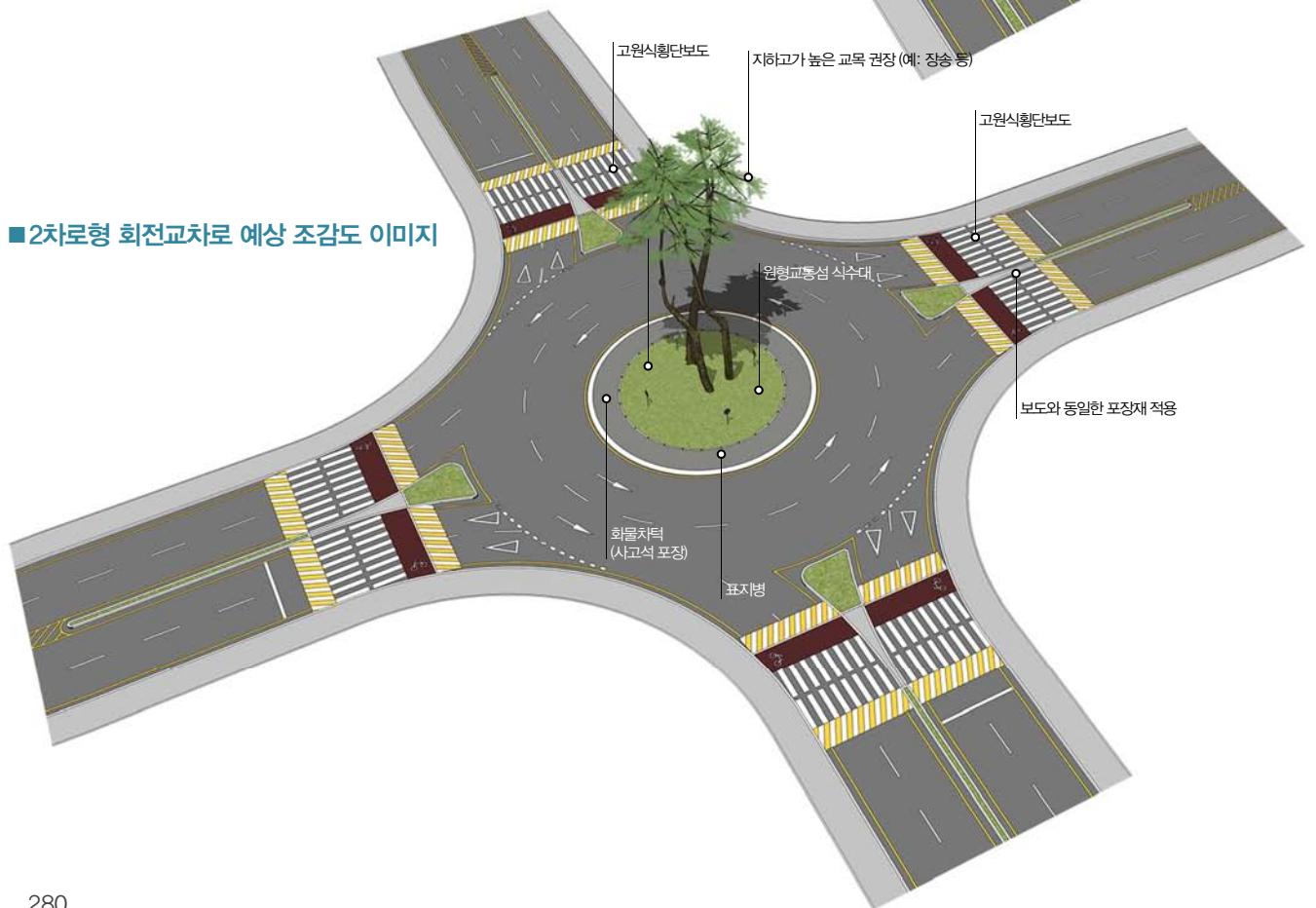


■ 2차로형 회전교차로 평면 및 단면 (Scale : None)

■ 1차로형 회전교차로 예상 조감도 이미지



■ 2차로형 회전교차로 예상 조감도 이미지



4. 운영체제 개선(안)

4.1.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방안

- 설치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제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구성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제9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균형감있게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균형발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 당연직 위원은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관광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공간·시각·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단, 안전 심의 등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부서의 팀장이 되고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소위원회의 운영**
-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소위원회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 공동위원회 운영**
- 양평군 경관 조례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리 기간 및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평군에서 운영 중인 타 위원회와 통합한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공동위원회는 도시·건축·경관·공공디자인 분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되며, 위원회 위원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30이상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균형발전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공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안)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대상은 아래와 같다.
 - 조례 개정(안)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조례 개정(안)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문 사항
 - 조례 개정(안) 별표1에 제시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 양평군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공공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썬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가로공간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장애물존 등	
	나. 어린이·노인·마을주민 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교차로, 횡단보도 등	
	다.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적용 가로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공공기관 청사, 읍·면사무소, 공공교육·연수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주민복지센터),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 공연장, 전시관, 홍보·기념관 등
	교통시설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요금소 등
	환경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기타	군 및 군 출연·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도로시설물	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터널, 생태통로, 입체교차로 등
	도로부속시설물	보도육교, 지하보도, 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막, 옹벽 등
공공시설물	대중교통시설물	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보관대, 교통차단·억제물, 주차 관련 시설물, 교통량 감지기 등
	보행안전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 펜스(교량용, 자전거도로용 포함), 가드레일, 가로등, 보행등, 보안등, 공원등, 배수구 덮개 등
	편의시설물	벤치, 파고라(쉼터 포함), 휴지통, 음수대, 가로판매대, 무인 키오스크, 공중전화부스, 인포메이션부스,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물	맨홀, 소화전, 가로등제어함, 교통신호제어기, 방재시설(제설함 포함), 방범용 감시카메라 등
	녹지시설물	가로수(수목) 보호대, 가로화분대, 분수대 등
	안내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 벽보판
	기타	군 및 군 출연·출자기관에서 설치하는 그 밖의 공공시설물에 준하는 사항
공공매체	정보매체 (안내시설물)	가. 관광안내표지, 종합안내표지, 시설방향유도표지, 현수막 게시대 등
		나. 공공건축물 건물명표지, LED 전광판, 주차안내표지, 실내안내표지 등
		다. 버스노선안내도, 구조물명칭표지, 각종 픽토그램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공사장 가설울타리) 등
	공공미술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시각이미지	군 상징물 (CI, BI, 캐릭터, 서체, 패턴 등)	

〈표 5-10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절차**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절차는 근거법에 따른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체계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관심의 운영지침(2018. 6. 4/국토교통부)를 참고하여 사전검토(서면 자문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서면 자문 절차

- 안건을 상정하는 사업 담당부서 또는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 이전에 서면 자문을 시행 할 수 있다.
-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발주부서는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심의 준비를 위하여 서면 자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사업자 및 설계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 설계 최종안이 도출된 이후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의 담당기관(담당부서)은 최종 설계(안)이 도출되기 이전 단계에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서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심의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 위원 중 분회의에 참석 예정인 3인을 서면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전자메일을 통해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서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서면 자문을 진행한 위원의 경우 본 위원회의 참석을 전제로 진행하여야 한다.
- 위원이 서면 자문한 의견에 대하여 반영 또는 부분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위원회 개최 시 서면 자문내용 및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 서면 자문을 진행한 위원은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전담부서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는 사업 담당부서 또는 사업주체에 전달하여야 한다. 단, 자문위원과 사업 담당부서 또는 사업주체의 개별 미팅 및 연락은 금지한다.
- 서면 자문을 거친 경우 위원회 심의결과는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중 하나로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5-08 서면 자문을 거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절차〉

사전 검토 절차

- 안건을 상정하는 사업 담당부서(기관)는 공공디자인 심의신청서, 심의 도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에 제출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를 개최한다.
- 심의는 객관성, 효율성, 관련 계획과의 연속성, 도시차원에서의 조화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양평균 공공 디자인 심의 위원용 체크리스트와 양평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 반려 중 하나로 결정되며 조건부 또는 재검토의결인 경우에는 각각에 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조정하여야 한다.
- 재심의 시 내용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당초 심의에 참석하였던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재구성한다.



〈그림 5-09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절차〉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도로공간(자동차중심도로) 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기본방향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한 디자인 적용			
	운전자 시점에서 공공디자인 환경의 연속성을 부여한 디자인 적용			
	자연경관으로의 시야를 확보하여 개방성을 강조한 디자인 적용			
공간구조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대상공간과 연결되는 도로공간 공공디자인 환경과의 일관성 부여			
	주행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한 기능성 중심의 계획 수립			
도시기반시설물	조형성 중심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성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 적용			
	구조체의 부피감을 완화시키고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구조체를 이용한 벽화(그래픽), 조형물(장식물), 연출조명 설치 지양			
	도시기반시설물 설치로 인한 사각지대 조성 지양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접근성을 배려한 계획 수립			
공공시설물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유사 디자인 적용			
	인접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의 통합설치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한 공공시설물의 설치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장식물 및 그래픽 적용 지양			
공공정보매체	양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볼(픽토그램) 및 기호의 활용			
	안전과 관련된 공공정보매체의 경우 인지성을 향상시킨 계획 적용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 조성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범죄예방환경설계	자연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 조성 지양			
	(경기도)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적용			

[종합 심의 의견*]

심의 위원 : (인)

*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표 5-11 도로공간(자동차중심도로) 체크리스트(심의 위원용)〉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도로공간(생활권도로) 체크리스트(심의위원회용)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기본방향	모든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배려한 디자인 적용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개방성을 강조한 디자인 적용			
	오랜 시간 지속가능한 효율성 있는 디자인 적용			
공간구조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보행자, 자전거, 차량의 동선이 명확히 분리된 안전한 공간구조 조성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보행의 연속성 유지			
도시기반시설물	조형성 중심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성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 적용			
	구조체의 부피감을 완화시키고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구조체를 이용한 벽화(그래픽), 조형물(장식물), 연출조명 설치 지양			
	도시기반시설물 설치로 인한 사각지대 조성 지양			
공공시설물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접근성을 배려한 계획 수립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유사 디자인 적용			
	인접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의 통합설치			
	보행동선과 중첩되지 않으며 보행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배려한 공공시설물의 설치			
공공정보매체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장식물 및 그래픽 적용 지양			
	양평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볼(픽토그램) 및 기호의 활용			
유니버설디자인	외국인 관광객 및 근로자, 다문화가정을 배려한 다국어 병기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 조성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범죄예방환경설계	자연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 조성 지양			
	(경기도)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적용			

[종합 심의 의견]

심의 위원 : (인)

*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표 5-12 도로공간(생활권도로) 체크리스트(심의 위원용)〉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건축물공간 체크리스트(심의위원회용)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기본방향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성을 강조한 디자인 적용			
	운전자 시점에서 공공디자인 환경의 연속성을 부여한 디자인 적용			
	모든 이용자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배려한 디자인 적용			
공간구조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공공건축물 외관은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보행자 및 운전자가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는 공간구조 조성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서의 성격 부여 보행동선의 접근성 및 연속성을 우선 배려한 디자인 적용			
공공시설물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유사 디자인 적용			
	인접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의 통합설치			
	다양한 방문객의 편의를 배려한 공공시설물의 설치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장식물 및 그래픽 적용 지양			
공공정보매체	양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볼(픽토그램) 및 기호의 활용			
	공공정보의 위계 설정 및 내용의 가독성 확보			
	공공정보를 제외한 그래픽 패턴 및 군 상징물 적용 지양			
유니버설디자인	내용 교체 및 수정보완이 용이한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적용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 조성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범죄예방환경설계	점자블럭, 점자안내표지, 안전바, 경사로 등의 장애인 및 사회약자를 배려한 공공시설물 설치기준 확대 적용			
	자연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 조성 지양			
	주·야간 방문객을 고려한 외부공간의 일정한 조도 확보			
	(경기도)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적용			

[종합 심의 의견*]

심의 위원 : (인)

*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표 5-13 건축물공간 체크리스트(심의 위원용)〉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조경공간 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기본방향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배려한 디자인 적용			
	자연과 사람과 시간이 완성해가는 지속성 있는 디자인 적용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성을 향상시킨 디자인 적용			
공간구조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조경공간 내 건축물 조성 시 자연경관과 조화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쉽게 찾을 수 있는 출입동선을 계획하고 보행동선을 우선 배려한 공간구조 조성			
도시기반시설물	조형성 중심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성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 적용			
	구조체의 부피감을 완화시키고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구조체를 이용한 벽화(그래픽), 조형물(장식물), 연출조명 설치 지양			
	도시기반시설물 설치로 인한 사각지대 조성 지양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접근성을 배려한 계획 수립			
공공시설물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유사 디자인 적용			
	인접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의 통합설치			
	보행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배려한 공공시설물의 설치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장식물 및 그래픽 적용 지양			
	공공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디자인 적용			
공공정보매체	양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볼(픽토그램) 및 기호의 활용			
	외국인 관광객 및 근로자, 다문화가정을 배려한 다국어 병기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 조성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범죄예방환경설계	자연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 조성 지양			
	(경기도)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적용			

[종합 심의 의견*]

심의 위원 : (인)

*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도로공간(자동차중심도로) 체크리스트(사업자 및 전담부서용)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기본방향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한 디자인 적용			
	운전자 시점에서 공공디자인 환경의 연속성을 부여한 디자인 적용			
	자연경관으로의 시야를 확보하여 개방성을 강조한 디자인 적용			
공간구조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대상공간과 연결되는 도로공간 공공디자인 환경과의 일관성 부여			
	주행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한 기능성 중심의 계획 수립			
도시기반시설물	조형성 중심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성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 적용			
	구조체의 부피감을 완화시키고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구조체를 이용한 벽화(그래픽), 조형물(장식물), 연출조명 설치 지양			
	도시기반시설물 설치로 인한 사각지대 조성 지양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접근성을 배려한 계획 수립			
공공시설물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유사 디자인 적용			
	인접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의 통합설치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한 공공시설물의 설치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장식물 및 그래픽 적용 지양			
공공정보매체	양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볼(픽토그램) 및 기호의 활용			
	안전과 관련된 공공정보매체의 경우 인지성을 향상시킨 계획 적용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 조성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범죄예방환경설계	자연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 조성 지양			
	(경기도)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적용			
[사업자 의견*]				

* 미반영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사업과 관련된 특이사항에 대한 설명 작성

(표 5-15 도로공간(자동차중심도로) 체크리스트(사업자 및 전담부서용))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도로공간(생활권도로) 체크리스트(사업자 및 전담부서용)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기본방향	모든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배려한 디자인 적용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개방성을 강조한 디자인 적용			
	오랜 시간 지속가능한 효율성 있는 디자인 적용			
공간구조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보행자, 자전거, 차량의 동선이 명확히 분리된 안전한 공간구조 조성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보행의 연속성 유지			
도시기반시설물	조형성 중심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성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 적용			
	구조체의 부피감을 완화시키고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구조체를 이용한 벽화(그래픽), 조형물(장식물), 연출조명 설치 지양			
	도시기반시설물 설치로 인한 사각지대 조성 지양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접근성을 배려한 계획 수립			
공공시설물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유사 디자인 적용			
	인접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의 통합설치			
	보행동선과 중첩되지 않으며 보행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배려한 공공시설물의 설치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장식물 및 그래픽 적용 지양			
공공정보매체	양평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볼(픽토그램) 및 기호의 활용			
	외국인 관광객 및 근로자, 다문화가정을 배려한 다국어 병기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 조성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범죄예방환경설계	자연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 조성 지양			
	(경기도)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적용			

[사업자 의견*]

* 미반영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사업과 관련된 특이사항에 대한 설명 작성

(표 5-16 도로공간(생활권도로) 체크리스트(사업자 및 전담부서용))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건축물공간 체크리스트(사업자 및 전담부서용)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기본방향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성을 강조한 디자인 적용			
	운전자 시점에서 공공디자인 환경의 연속성을 부여한 디자인 적용			
	모든 이용자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배려한 디자인 적용			
공간구조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공공건축물 외관은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보행자 및 운전자가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는 공간구조 조성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서의 성격 부여			
	보행동선의 접근성 및 연속성을 우선 배려한 디자인 적용			
공공시설물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유사 디자인 적용			
	인접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의 통합설치			
	다양한 방문객의 편의를 배려한 공공시설물의 설치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장식물 및 그래픽 적용 지양			
공공정보매체	양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볼(픽토그램) 및 기호의 활용			
	공공정보의 위계 설정 및 내용의 가독성 확보			
	공공정보를 제외한 그래픽 패턴 및 군 상징물 적용 지양			
	내용 교체 및 수정보완이 용이한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적용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 조성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점자블럭, 점자안내표지, 안전바, 경사로 등의 장애인 및 사회약자를 배려한 공공시설물 설치기준 확대 적용			
범죄예방환경설계	자연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 조성 지양			
	주·야간 방문객을 고려한 외부공간의 일정한 조도 확보			
	(경기도)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적용			

[사업자 의견*]

* 미반영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사업과 관련된 특이사항에 대한 설명 작성

〈표 5-17 건축물공간 체크리스트(사업자 및 전담부서용)〉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조경공간 체크리스트(사업자 및 전담부서용)

구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 없음
기본방향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배려한 디자인 적용			
	자연과 사람과 시간이 완성해가는 지속성 있는 디자인 적용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성을 향상시킨 디자인 적용			
공간구조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조경공간 내 건축물 조성 시 자연경관과 조화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쉽게 찾을 수 있는 출입동선을 계획하고 보행동선을 우선 배려한 공간구조 조성			
도시기반시설물	조형성 중심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성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 적용			
	구조체의 부피감을 완화시키고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구조체를 이용한 벽화(그래픽), 조형물(장식물), 연출조명 설치 지양			
	도시기반시설물 설치로 인한 사각지대 조성 지양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접근성을 배려한 계획 수립			
공공시설물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유사 디자인 적용			
	인접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정보매체의 통합설치			
	보행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배려한 공공시설물의 설치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장식물 및 그래픽 적용 지양			
	공공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디자인 적용			
공공정보매체	양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볼(픽토그램) 및 기호의 활용			
	외국인 관광객 및 근로자, 다문화가정을 배려한 다국어 병기			
유니버설디자인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 조성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범죄예방환경설계	자연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 조성 지양			
	(경기도)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 적용			

[사업자 의견*]

* 미반영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사업과 관련된 특이사항에 대한 설명 작성

〈표 5-18 조경공간 체크리스트(사업자 및 전담부서용)〉

4.2. 전담부서 운영(안)

전담부서의 운영 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제19조에 근거하여 공공 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전담부서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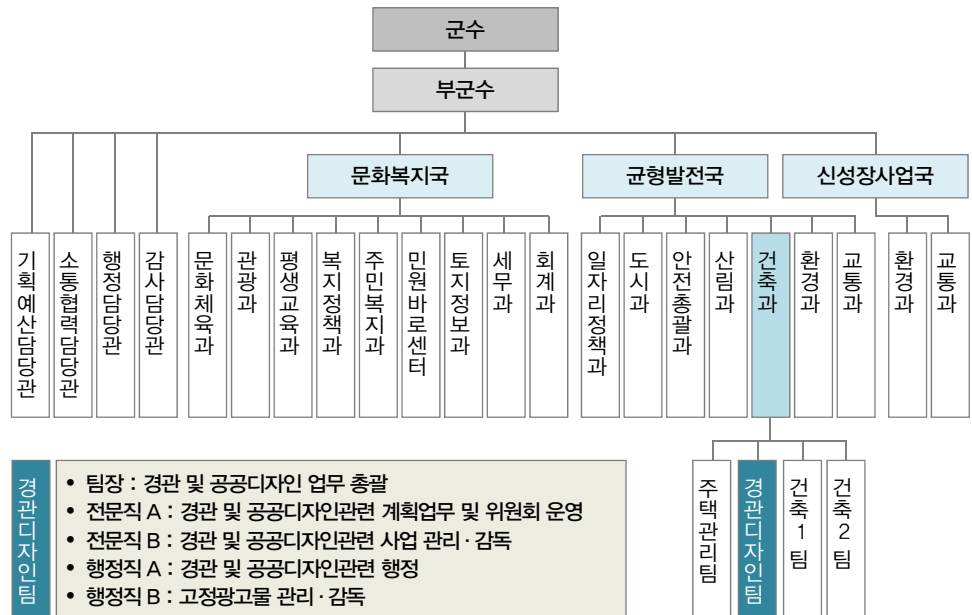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는 양평군청 및 12개 읍·면의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전담부서의 필요성

- 2019년 현재 양평군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는 균형발전국 건축과 경관디자인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팀 내 행정인력 및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팀장1명, 담당 주무관 2명, 총 3명)
- 공공디자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는 균형발전국 내 7개 과에서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지만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통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양평군의 도시 특성상 경관과 공공디자인 업무를 통합한 전담조직의 운영이 효율적이므로 현재 운영중인 경관디자인팀의 행정인력 및 전문인력을 총원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 사업의 관리감독, 관련 정책의 수립, 타 부서 협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전담부서의 구성 및 운영

- 양평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행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경관디자인팀의 주요 업무에 공공디자인 업무를 추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 현재 행정인력과 전문인력이 각각 1명인 전담부서의 인력에 각각 1명씩 신규 보강하여 팀장을 포함한 총 5명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 전문인력의 구성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분야의 학문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 전문인력 총원 시까지는 전담부서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원 중 양평군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디자인분야 위촉직 위원 1~2명의 주기적인 자문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5-10 양평군 공공디자인 전담조직 조직도 구성(안)〉

4.3.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 활용방안

인증제 운영의 목적

- 경기도(광역단체)에서는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 디자인을 발굴·보급하는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 31개 시·군(기초단체)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하여 도시경관의 아름다움과 기능적 가치를 제고하고 관련 기업의 디자인능력의 향상을 유도한다.

인증 대상 공공시설물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대상은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교통시설물, 위생·휴게시설물, 광고시설물, 판매관리 시설물, 기타 공공시설물 등으로 구분된다.

분류	시설물의 종류
교통시설물	펜스(교량, 보행자, 자전거), 블라드, 버스승강장, 자전거보관대, 방음벽(4m 이하)등
위생휴게시설물	휴지통, 음수대, 벤치·의자, 파고라 등
광고시설물	게시(공고)판, 현수막 걸이대 등
판매관리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도 사인물 등
기타 공공시설물	기타 도지사가 공공시설물로 인정하는 시설물

(표 5-19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 대상 시설물)

인증제 운영의 기대효과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이하 "경기도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이라 한다)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인증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에게 디자인 및 품질이 검증된 공공시설물이다.
- 공공시설물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사업 진행 시 디자인 선정을 위한 시간을 단축 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하는 군청의 발주부서 및 읍·면별 사업 감독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던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적 일관성을 부여하고 품질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양평군 전체의 공공디자인 환경을 제고한다.

인증제품 활용의 유도방안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중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안) 제8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제작 및 설치를 주요한 범위로 계획하는 사업에서 공공시설물을 인증제품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경기도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의 제작단가, 수급시기 등을 사유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유사한 형태(규격), 색채, 재료 등이 적용한 유사한 디자인 제품을 권장한다. 단, 유사제품 적용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없다.
- 경기도 공공시설물 인증제품은 인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인증제품의 유효기간 경과 후 재인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 내의 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재인증 제품의 적용을 권장한다.
- 가로등, 펜스, 블라드, 버스승강장 등과 같이 도로공간을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연결되는 도로공간에 적용된 인증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적용을 권장하여 도시차원에서의 디자인적 연속성을 부여한다.

인증제품의 예시

가로등



보도펜스



수목보호대



벤치



블라드



보행등



교량용 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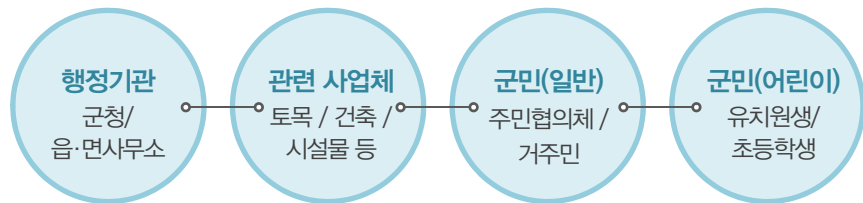


〈그림 5-11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의 예시〉

4.4. 공공디자인 교육방안

교육의 목적 및 대상

-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야별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 교육의 대상은 행정공무원, 양평군 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체, 공공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군민 또는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5-12 양평군 공공디자인 교육의 제안 대상〉

행정기관 교육방안

- 행정기관 내 정기적인 인사 이동 및 부서간의 협업 등을 고려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공디자인의 방향성 및 도시 내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한다.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 진흥계획의 주요 활용주체인 행정기관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한다.
-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6주 ~ 8주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정기간의 교육 후 국내 공공디자인 선진도시의 답사 등을 통해 실제 도시공간 속에 적용된 공공디자인 우수사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경우 행정조직의 특성과 양평군의 이해를 토대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관련 사업체 교육방안

- 양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조를 소개하고 참여하는 사업의 특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단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권장한다.
- 양평군 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권장사례 및 지양사례를 소개하여 도시차원에서 올바른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공유한다.
-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및 절차,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 등을 소개하여 관련 사업 진행 시 단계별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군민 교육방안

-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군 전체의 올바른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유도한다.
-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약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배려를 통해 평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시각 장애 체험, 휠체어 체험, 목발 체험, 유모차 체험 등을 통해 생활공간 내에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한다.



〈그림 5-13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시행 사례〉